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신관호

현안분석

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

박주철

정책토론포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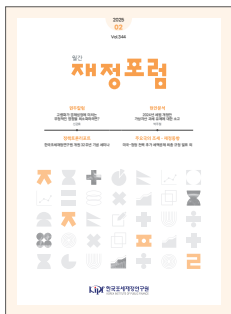


음팩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5년 2월 17일 발행

통권 제34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 | |
|--------|---|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발행인 |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 편집위원장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편집위원 |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편집간사 | 조혜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편집·제작 |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길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
| 디자인·인쇄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신관호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안분석

10

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

-법학적 쟁점을 중심으로-

박주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토론포럼

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

미래를 설계하는 조세·재정 정책토론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2

미국-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들어가며: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30년 이상 걸렸다. 일본은 12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이 기록을 갱신했다. 한편, 한국은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또 다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력의 감소이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은 점차 하락하며, 이에 따른 노동력 투입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대처 방안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여러 방식으로 상쇄될 수 있다. 첫째, 부족한 노동력을 노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보충할 수 있다.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노년

노년층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현상을 '실버배당(silver dividend)'이라고 부른다.

층은 수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어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노동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노동 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처럼 노년층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현상을 '실버배당(silver dividend)'이라고 부른다. 노동환경은 과거보다 안전해지고 유연해지면서 고령층이 노동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변화해 왔다. 필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실버배당에 의해 거의 보충되고 있다.

둘째, 이민인력의 확대이다. 젊은 이민자의 유입 확대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다. 만약 질적으로 우수한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혁신과 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민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양질의 이민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대부분은 저숙련 노동자로 국내 젊은 층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당장 부족한 저숙련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문화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인적자본의 확대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는 양적인 부족을 양적으로 보충하였다면 인적자본의 확대는 양적인 부족을 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게리 베커 교수는 자녀 수가 하락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 한 명당 교육투자액을 늘려 자녀의 양적인 축소를 질적 향상으로 보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자녀 수가 줄어들면 부모는 자녀 한 명당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므로 자녀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부족을 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자본의 확대이다. 만약 자본과 노동 사이에 대체성이 높다면 부족한 노동력을 자본이 보완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로봇 활용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국가일수록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로봇 활용도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로 노동자 일인당 로봇 활용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MIT의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와 보스턴 대학의 파스쿠엘 레스트레포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로봇 활용이 관련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는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므로 로봇과 같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는 국가는 노동력이 풍부하므로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자동화와 관련한 기술은 대체로 빠르게 향상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의 기술진보가 빨라지고 경제성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령층이 기업 내 주요 직책을 독점하게 되면, 젊은 층이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방해하여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화와 기술진보의 관계

이와 같이 고령화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도전 과제이지만 대응방식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의 둔화를 경험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기술진보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아세모글루 교수와 레스트레포 교수의 견해와는 달리 고령화가 기술진보를 늦추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혁신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혁신은 주로 새로운 기업에 의해 시작되고 이러한 기업의 창업은 대개 젊은 층이 주도하기 마련이다. 기업 내에 고령층의 비중이 높을 경우, 이들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령층이 기업 내 주요 직책을 독점하게 되면, 젊은 층이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방해하여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으려면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나가며

결국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으려면 기술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즉 단순히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실버배당이나 이민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령화로 인해 기술진보가 둔화되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KIPF](#)

현안분석



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 -법학적 쟁점을 중심으로-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joocpark@kipf.re.kr

2024년 세법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 -법학적 쟁점을 중심으로-¹⁾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2024년 7월 25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에는 이 미 두 차례 유예가 되었던 가상자산²⁾ 과세를 2027년 1월 1일까지 다시 한번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대해서 줄곧 반대의견³⁾을 보인 야당이 2024년 12월 1일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세 번째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⁴⁾ 정책 신뢰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야 공히 내세우고 있는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현시점의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였다. 여기에서의 미비는 크게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상의 미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정치권의 유예 결정의 타당성을 논하는 데에 있지 않다. 유예가 확정된 마당에 그 결정의 당위를 따지는 비생산적 논쟁보다 유예 대상이 된 제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법학의 관점에서 유예된 법령은 어떻게 가상자산 과세를 구상하였는지, 그리고 설계된 법령은 과세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며 그 허점은 어디에 있었는지에 집중하려고 한다.

법학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하여 참고할 선행연구들이 이미 존재한다. 대표적인 문헌을 소개하면, 이경근(2020)은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특별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시 분쟁 가능성을 야기하는 개정법의 기타소득 과세를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함을 밝힌다.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평가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2) 본고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산을 '가상자산'이라 칭한다.

3) 야당은 공제한도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되, 과세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4)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2024. 12. 1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쟁점을 다루고자
하며, 쟁점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다룬다.

김갑래(2022)는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의 확보, 기타소득 과세의 양도소득 과세로의 전환, 새로운 가상자산 취득유형에 대한 기준 마련,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의 허용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길용원(2023) 또한 가상자산의 새로운 취득유형을 제시하고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것과 기타소득 과세의 양도소득 과세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문헌에서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다양한 선행연구⁵⁾의 내용을 살피되, 법령이 구상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도상의 허점을 짚고자 하였다. 유예된 법제가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며 그 허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고자 하였다라는 점이 기존 선행연구와 본고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학의 관점에서 가상자산 과세 논쟁을 보면, 대부분 「소득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득에 대해 순자산증가설이나 완전포괄주의를 취하는 「법인세법」이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과세상 취급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소득원천설을 취하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과세상 취급은 짚어야 할 법이론적 쟁점이 많은 데에 기인한다.⁶⁾ 본고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쟁점을 다루고자 하며, 쟁점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다룬다.

본고는 법학적 논증 방식을 채택한 법학 논문이다. 논증을 위하여 국내외 주요 문헌을 중심으로 한 비구조화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질적 문헌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총 6장으로 이루어진다. 제Ⅱ장은 가상자산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보여주며, 제Ⅲ장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담고 있다. 제Ⅳ장은 외국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요약하며, 제Ⅴ장은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 법제가 준비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5) 필자가 참고한 주요 국내 문헌은 권민경(2021), 길용원(2023), 김갑래(2022), 김자봉(2018), 박선영(2022), 안성희(2024), 이경근(2020), 이은마·윤태화(2023), 이정수(2023), 장기용(2020), 정승영(2023), 정승영(2015), 정유석(2021), 천창민(2022), 최정희(2020) 등이다.

6)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의 역사적 변천과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의 변화는 생략하고 그 개념을 단순화하면,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개념)은 그 원천과 이유가 무엇이든 부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는 견해이고 소득원천설(제한적 소득개념)은 일정한 수입의 원천을 통한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소득으로 보는 견해이다.

II. 가상자산 개관

1. 가상자산의 개념

모든 사회과학이 그러하듯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경우 2008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는 '가상통화'를 게임상의 통화, P2P⁷⁾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를 포함한 법정통화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전자교환 단위로 넓게 정의한다.⁸⁾ 유럽연합(이하 'EU'라 한다)은 '가상자산'을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가치나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한다. 주요 국제기구⁹⁾와 국내외 문헌에 의하면 가상자산의 공통된 개념 요소로 블록체인, 분산원장, 암호화를 들 수 있는데, 정리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된 자산”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가 가상자산의 용어를 어떻게 채택할지는 여전히 논쟁적 주제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가상화폐, 코인, 토큰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월한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상의 혼동은 개별 국가의 규제기관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인데, [그림 1]은 세계 23개 주요 규제당국¹¹⁾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상자산 용어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가상화폐,
코인, 토큰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월한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데이터 교환 방식을 의미한다.

8) OECD,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Action 1.,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2014. 9. pp. 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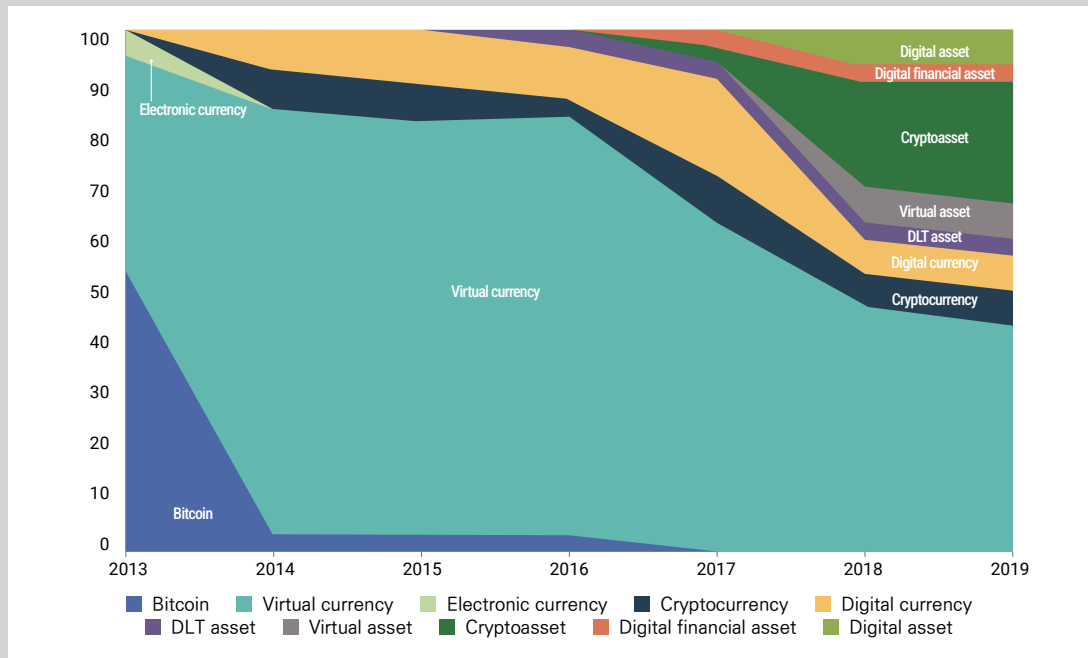
9)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증권시장당국(ESMA),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있다.

10) Apolline Blandin et al.,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3/2019, 2019, p. 54.

11) 아부다비, 호주, 버뮤다, 캐나다, 에스토니아, EU,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몰타, 멕시코,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태국, 영국, 미국의 규제당국을 의미한다.

그림 1 각국 규제기관의 가상자산 용어의 변화

(단위: %)



출처 Apolline Blandin et al. (2019),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p. 36에서 재인용

[그림 1]을 보면, 2013년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개념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다가, 이후 비트코인 대신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후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 자산적 성질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자산 개념의 선택은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출발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가상자산의 성질을 반영하는 개념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그에 따른 과세체계가 달라진다. 예컨대 가상자산의 통화적 성질은 이자소득 개념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자산적 성질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자산적 성질은 양도소득 개념을 상징할 수 있게 하지만, 통화적 성질은 그렇지 않다. 용어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가 가지는 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문제지만, 국제적 규제가 필요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수립에 있어서 국제적 공조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¹²⁾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제V장에서 살펴본다.

12) Apolline Blandin et al.(2019),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p. 54.

2. 가상자산의 성질

학계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논할 때 화폐성, 자산성, 증권성의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폐의 기능을 가치척도, 가치저장, 결제 수단으로 본다면 법정통화와 연동되고 실생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결제, 송금, 지급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존재한다.¹³⁾ 일부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투자 목적의 가치 변동성이 커 가치저장의 기능이 떨어진다. 대부분 국가는 가상자산을 통화로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이며, 강제통용력을 인정하여 법정통화로까지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¹⁴⁾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의 통화적 성질을 인정한 사법해석은 아직 없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은 보편적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이미 가상자산을 채고자산¹⁵⁾이나 무형자산¹⁶⁾으로 보았다. 다만 해석위원회의 해석과 달리 가상자산을 금융자산¹⁷⁾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¹⁸⁾ 자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가지는지의 문제는 과세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일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증권이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주식, 채권 등 다른 증권과 과세체계를 달리 구성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증권성 인정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앙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코인¹⁹⁾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 사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²⁰⁾ 개별 국가의 가상자

대부분 국가는
가상자산을
통화로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이며,
강제통용력을
인정하여
법정통화로까지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13) 이러한 가상자산의 예로는 비트코인(BTC), 비트코인 캐시(BCH), 라이트 코인(LTC) 등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USD 코인(USDC), 다이(DAI), 트루USD(TUSD) 등도 통화적 성질을 일부 보유한다고 평가된다.

14) 거의 유일한 사례로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였다.

15) 채고자산은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6) 무형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7) 금융자산이란, 화폐, 예금, 유가증권, 대부채권 등의 청구권 형태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18) 자산의 성질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채고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융자산의 거래는 그렇지 않다. 소득세 과세에 있어 채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은 모두 과세가 가능하나, 소득의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다. 손자산증가세를 취하는 법인세 과세에 있어 채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의 과세상 차이는 크지 않다.

19)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스테이블코인(BUSD),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엑시인피니트(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이다. 이 중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아툼, 샌드박스 등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이다.

20) 가상자산의 일종인 바이토큰(BA)에 대해서 증권성을 부정한 판례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참고. 한편, 다른 사건으로 소위 루나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랜스 공동창업자에 대한 구속기각 결정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루나 코인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그 밖의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으로 분류하는 단순한 접근법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그 방법도 진화해 왔다.

산에 대한 증권성 인정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가상자산 성질을 규명하는 작업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와 과세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의 온전한 과세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국가가 과세 정책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강조되는 가상자산의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3. 가상자산의 분류

가상자산의 분류 방법은 다양한데, 종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그 밖의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으로 분류하는 단순한 접근법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그 방법도 진화해 왔다. 다종의 가상자산²¹⁾에 대한 분류법은 크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와 성질에 따른 분류로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법도 그 기준 사이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개발자가 최초 가상자산을 개발한 목적과 이용자의 가상자산 활용 의도에 집중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세분하면, 결제 토큰,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플랫폼 토큰, 디파이 코인, 프라이버시 코인, 증권형 토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사용 목적과 활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질(기능)에 따른 분류로 대체된다. 현재 가상자산 분류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급 결제나 가치 이전의 교환적 성질을 가지는 ① 지불형 토큰,²²⁾ 주식 등 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② 증권형 토큰,²³⁾ 특정 시스템의 활용적 성질을 가지는 ③ 유틸리티 토큰²⁴⁾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²⁵⁾

성질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법은 과세상 매우 유의미한 기준이 된다. 가상자산

21) 다종의 가상자산(코인)이 가능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의 공로가 크다. 대표적인 메인넷인 이더리움 토큰 기술 표준인 ERC-20에서 생산한 대표적 가상자산에는 이더(ETH), 바이낸스 코인(BNB), 체인링크(LINK), 폴리곤(MATIC), 유니스왐(UNI), 파일코인(FIL), 아베(AAVE),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렛트 비트코인(WBTC)가 있다. ERC-20 토큰의 종류는 수천 개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22) 교환이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을 통칭하며, 교환토큰, 지급토큰이라고도 한다.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 할 수 있다.

23) 투자를 통한 수익권이 부여된 토큰으로 투자토큰, 자산 토큰이라고 한다. 해당 토큰에 대한 법적 규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논외로 하는 넓은 개념이다.

24)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 기능을 부여하는 토큰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 우리나라는 유틸리티 토큰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EU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9호 참고

25) 구분의 범주가 완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스위스 금융당국(FIMMA), 영국의 금융감독청(FCA), OECD 등이 이러한 3분법을 택한다.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pp. 10-11.

과세를 도입하고 이미 시행하는 국가는 주로 지불형 토큰의 자산성에 주목하여 자산 활용에 따른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처럼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하며, 과세도 금융상품으로서 규제받게 된다. 유틸리티 토큰은 현재 규제가 가장 미약한 토큰으로 볼 수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과세상 규제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가상자산이 반드시 하나의 분류법에 포섭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유틸리티 토큰의 성질을 가지는 가상자산이 ICO를 통해 투자 성질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토큰이 다중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체계가 변할 수 있음 또한 당연하다.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하나의 가상자산이 반드시 하나의 분류법에 포섭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III.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제III장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하의 내용은 ‘2024년 세법 개정안’ 실현에 따라 유예가 된 법제의 내용을 기초로 검토한 것이다.

1.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사례 1

甲은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에서 키운 디지털 고양이 아이템을 B에게 팔아 3천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이를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 甲이 매도한 디지털 아이템은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세법은 가상자산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의 가상자산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²⁶⁾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²⁷⁾ 그러므로 세법도 이 개념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2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27) 한국 법제에서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은 2020년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최초이다. 이후 당해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큰 변화 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전된 것이다.

만일 어떠한 디지털자산이 교환성을 가지지 못하거나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적 징표로 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을 것, ② 전자적 증표일 것을 들고 있어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여기에 포함될 것처럼 보이거나 기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²⁸⁾ 만일 어떠한 디지털자산이 교환성을 가지지 못하거나²⁹⁾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가상자산의 기능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지불형토큰³⁰⁾만을 가상자산으로 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그것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자산이며, 법정화폐와 교환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이라면 가상자산이 아니다.³¹⁾ 그 밖에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전자적 형태의 포인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³²⁾, 대체불가능토큰(NFT)은 모두 가상자산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예된 세법은 가상자산 범위에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을 배제하고 있으며 실제 과세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면 그 범위는 훨씬 좁아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³³⁾

2.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자산성을 가지는 데에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가상자산이 재산적 이익의 일종으로 자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³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지 무형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세법은 무형자산으로 규율한다. 가상자산이 통화로서의 성질을 일부 가짐은 앞서 살펴보았으나, 현행 우리나라 법제는 가상자산의 통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가상화폐에 대해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

2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의 규정의 단서를 활용해 그 범위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단서).

29) 법정통화, 채화, 용역 등과 교환이 불가능한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고).

30) 교환토큰, 지급토큰을 의미한다.

3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32) 소위 말하는 CBDC를 의미한다.

33) 필자는 포괄적 규정을 통해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주장(기령 김용원(2023) p. 95; 김갑래(2022) p. 3 등)과 다른 생각임을 밝힌다. 세법이 채택한 가상자산 개념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매우 기교적 방식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자산의 상당 부분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더 옳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600여 종의 교환토큰일 뿐이며, 나머지 디지털자산 거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34)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재산상 이익으로 단순한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20936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며, 법정화폐와 함께 취급되지 않아 보호 수준이 통화에 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개별 세법도 대체로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성질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즉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한 법원의 법률해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³⁶⁾

3. 가상자산의 과세 방법

유예된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한다.³⁷⁾ 제Ⅳ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유형을 크게 자본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는데,³⁸⁾ 우리나라는 일본 법제를 차용하여 기타소득 과세로 결정하게 되었다. 통상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대상이 계속성 없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열거한 것에 비추어,³⁹⁾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계속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학계의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한데, 대부분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⁴⁰⁾

가상자산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다.⁴¹⁾ 이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⁴²⁾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다.⁴³⁾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22%이다.⁴⁴⁾

가상자산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다.

35)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참조

36) 증권성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법적 혼란이 주된 이유가 아닐까 추정한다. 증권성을 인정하면, 코인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하며, 모집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3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38) 전자의 과세체계를 가지는 국가는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며, 후자의 과세체계를 가지는 국가는 일본이다.

39)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40) 기타소득 과세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김용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조세법학회, 2023, p. 97

41)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42)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산정은 ①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국세청장 고시)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이나 ② 그 외의 가상자산의 경우,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43)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44)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사례 2

甲은 2021년 10월 6일에 2개의 비트코인(BTC)을 乙부터 1억 2,400만원에 취득하고 2025. 7. 1. 丙에게 같은 비트코인을 3억 2,400만원에 매도한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인가?(단, 2024년 12월 31일 24 1비트코인 시가는 9,000만원)

→ 1억 4,400만원(3억 2,400만원 - 1억 8,000만원)⁴⁵⁾

법이 정하는 소득을 인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행위 태양은 ‘양도’와 ‘대여’다. 양도의 개념에 가상자산의 매매가 당연히 포함됨에는 의문이 없으나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이 양도에 포함되는지는 문제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양도의 개념과 굳이 달리 해석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새로운 가상자산의 취득 태양의 등장에 따라 대여를 어떻게 해석할지인데,⁴⁶⁾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V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발생 시점은 양도를 통한 이익 또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이다. 대여에서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⁴⁷⁾

사례 3

甲은 2022. 10. 6. 이더(ETH) 10개를 A부터 각 100만원에 취득하고 2023. 11. 1. 이더 10개를 각 50만원에 취득한 뒤 2024. 5. 5. 이더 10개를 C에게 각 150만원에 매도한 경우,⁴⁸⁾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의 계산법은?

→ (선입선출법)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1,500만원) - 필요경비(취득가액 : 1,000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250만원⁴⁹⁾

→ (이동평균법)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1,500만원) - 필요경비(취득가액 : 750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500만원⁵⁰⁾

법이 예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식은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다. 선

45) 취득가액은 1억 2,400만원이나 2024년 12월 31일 시가인 1억 8천만원이 더 크므로 산식은 3억 2,4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을 뺀 1억 4,400만원이 된다. 해당 금액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금액은 3,113만원이다.

46) 에어드롭, 하드포크, 렌딩 등의 법률해석 문제로 법문이나 기획재정부·국세청의 구체적 과세 방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이다.

47) 대여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갑래(2022) p. 5 참고

48) 취득 과정에서 부대비용(거래수수료, 세무수수료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49)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세액은 55만원이 된다.

50)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세액은 110만원이 된다.

입선출법은 가상자산 주소별⁵¹⁾로 계산하는데,⁵²⁾ 납세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로 소득을 얻었다면 이동평균법이 적용된다. 이동평균법은 가상자산을 취득한 시점마다 취득 금액을 합산한 후 총금액을 보유한 가상자산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가상자산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사례 3>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2022. 10. 6. 먼저 취득한 10개의 이더는 곧 2024. 5. 5. 판매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다. 반면 이동평균법에 따르면 2022. 10. 6. 취득가액인 1,000만원과 2023. 11. 1. 취득가액인 500만원의 평균값인 750만원(개당 75만원)이 취득가액이 된다.⁵³⁾

<사례 3>의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의 계산 방식은 편의를 위하여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 계산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거래소 가상자산의 실시간 가격 변동성과 빈번한 거래 및 거래 태양인 매매와 교환이 혼합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가 거래를 추적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다.⁵⁴⁾

법은 과세기간 내에 가상자산과 다른 가상자산 사이의 손익통산은 허용하지만 가상자산의 손익과 다른 금융자산의 손익 사이의 통산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해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비거주자에 대한 가상자산 원천소득 과세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과세자료의 확보 방안

「소득세법」은 국제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⁵⁵⁾ 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상자산거래명세서⁵⁶⁾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⁵⁷⁾를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명세서에는 납세자의 인적정보, 가상자산의 중

법은 과세기간 내에
가상자산과 다른
가상자산 사이의
손익통산은
허용하지만
가상자산의 손익과
다른 금융자산의
손익 사이의 통산은
허용하지 않는다.

5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 제2호 나목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53) 한편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산출은 기축 가상자산(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 간의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54) 이러한 이유로 국제청은 취득가액에 대한 총평균법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한경 코리아마켓, 2024. 6. 25.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50754g\(2024. 12. 2. 접속\)](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50754g(2024. 12. 2. 접속)) 참고

55) 「소득세법」 제164조의4

5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 서식

5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 서식

류,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상대방의 가상자산 주소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2024년 11월 13일 현재 40개 사업자가 신고되어 있다.⁵⁸⁾ 신고된 사업자는 모두 중앙화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업무를 제공하거나 가상자산 지급관리업자이며 탈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한 디파이 서비스 제공업자는 없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⁵⁹⁾

현재 탈중앙화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방안은 법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조금더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 구분 | 21년 하반기 |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
| 시가총액 | 55.2조원 | 23조원 | 19조원 | 28.4조원 | 43.6조원 |
| 일평균 거래규모 | 11.3조원 | 5.3조원 | 3.0조원 | 2.9조원 | 3.6조원 |
| 총영업이익 | 1.64조원 | 0.63조원 | 0.13조원 | 0.23조원 | 0.27조원 |
| 가상자산수 (중복상장 제외) | 1,257개 (623개) | 1,371개 (638개) | 1,362개 (625개) | 1,362개 (622개) | 1,333개 (600개) |
| 등록계정수 | 1,525만개 | 1,310만개 | 1,178만개 | 950만개 | 1,816만개 ¹⁾ |
| 실제 이용자 | 558만명 | 690만명 | 627만명 | 606만명 | 645만명 |
| 가상자산 사업자 | 29개(거래 24, 기타 5) | 35개(거래 26, 기타 9) | 36개(거래 27, 기타 9) | 35개(거래 26, 기타 9) | 29개(거래 22, 기타 7) |

주 1) 회원가입자가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도(유효기간제)가 2023. 9. 15. 폐지되면서 다수의 휴면계정이 일반 등록 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정 수가 급증함

출처 금융위원회 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정리함, [https://www.fsc.go.kr/no010101\(2024. 10. 24. 접속\)](https://www.fsc.go.kr/no010101(2024. 10. 24. 접속)) 참고

국세청이 과세를 예정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실제 1,250종⁶⁰⁾이나, 실제 납세자가 중앙화거래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총 600여 종이 다. 즉 600여 종 이외의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확보할 방안에 대한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¹⁾ 결국 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세법의 독자적 가상자산 개념의 정립과 다른 디지털자산을 포섭하기 위한 법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제V장에서 좀 더 설명한다.

58) 신고된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BTX, 프로 비트, 포블,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폼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오하이월렛, 캐서레스트, 덴앤덴,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움, 오아시스, 큐비트, 카르도, 델리오, 페이코인, 커스텔라, 코인빗,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덱스, 아이넥스이다.

59)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

60) 국세청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ldx=44&tm2lldx=4403030000&tm3lldx=4403030100\(2024. 12. 7. 접속\)](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ldx=44&tm2lldx=4403030000&tm3lldx=4403030100(2024. 12. 7. 접속)) 참고

61)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우회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V장 1.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보고 체계의 확립 부분 참고

IV.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시행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전후로 세계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표 2 주요국¹⁾ 비사업용 가상자산 과세제도

| 체계 | 포괄주의 | | 열거주의 | | |
|--------------------|--------------------------------|---------------|-------------------------------|--------------------------|----------------|
| |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한국 |
| 대여소득 | 일반소득(종합과세) | 잡소득(종합과세) | 기타소득(종합과세) | 잡소득 ²⁾ (종합과세) | 기타소득(분리과세) |
| 양도소득 | 자본이득 (단기-종합과세) (장기-분리과세) | 잡소득 (종합과세) | 기타소득 (단기-종합과세) (장기-비과세) | 자본이득 (분리과세)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공제-감면 | 장기(41,675달러) | 20만엔 | 단기-600유로 장기-비과세 | 12,300파운드 | 250만원 |
| 손익통산 ³⁾ | 허용 | 불가 | 장기-비과세 | 허용 | 불가 |
| 이월공제 ³⁾ | 허용(기한 없음) | 불가 | 허용(단기) | 허용(기한 없음) | 불가 |
| 법적성질 | 자산 | 자산 | 자산 | 자산 | 자산 |
| 개시 | 2014 | 2017 | 20224) | 2018 | 유예(3차) |

주 1) 주요국 선정은 가상자산 거래의 시기총액을 고려한 것임(단, 중국 제외)

2) 영국의 경우 가상자산 대여를 통해 고정된 수익을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은 잡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수익은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임

3) 손익통산과 결손금의 이월공제 인정은 소득세제의 체계(포괄주의, 열거주의)와 관련성이 없음. 같은 의견으로 김갑래(2022) p. 8

4) 독일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논쟁은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본고는 독일 재무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 2022. 5. 10.을 그 기준으로 삼음. 다만,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봄

출처 김갑래(2022) p. 9의 표를 필자가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함

1.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 법제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 디지털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과세 대상 자산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NFT 거래로 인한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세제를 택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의 주요 요소로 대체 가능성을 삼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은 하지 않으며, IRS 지침을 통해 기존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⁶²⁾

62) 이는 소득과세에 있어 우리나라가 열거주의 소득 개념을 채택한 반면, 미국이 포괄주의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세제를 택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의 주요 요소로 대체 가능성을 삼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으며, IRS 지침을 통해 기존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 양도로부터 얻은 소득은 자본자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산과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⁶³⁾ 아울러 장·단기 자본손실을 모두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그 기한도 제한이 없다. 양도소득은 장기투자자에 따른 장기자본이득과 단기투자자에 따른 단기자본이득을 구분하여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는데, 장단기의 기준은 1년이다. 단기자본이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37%까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장기자본이득은 소득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세할 수 있다.

2. 영국의 가상자산 과세 법제

영국은 별도의 세법을 제·개정하지는 않고 금융감독청의 지침을 통해서 기존 세법을 적용하여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암호자산을 “전송, 저장, 거래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암호화된 디지털 표시”로 정의하며,⁶⁴⁾ 통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개념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NFT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⁶⁵⁾ 영국 정부는 기술 발전에 따라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의 범위가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영국은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한다.⁶⁶⁾ 세율은 최소 25%에서 45%까지 부과되며,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다른 투자자산 간의 손익 통산 또한 허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채굴과 스테이킹에 의한 소득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에어드롭, 하드포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3.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 법제

일본은 세법에서 별도로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⁶⁷⁾(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의 가상자산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한다. 자금

63) 따라서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손익 통산도 가능하다. 예컨대 가상자산 양도로 10만달러의 소득을 얻고 주식으로 10만달러의 손실이 있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0원이다.

64) Cryptoassets Manual, CRYPTO10100,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10100/> (2024. 12. 7. 접속) 참고

65)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August 21, 202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2024. 12. 6. 접속\)](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2024. 12. 6. 접속)) 참고

66) 가상자산 소득을 사업의 일환으로 얻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

67) 이하 '자금결제법'이라 한다.

결제법은 가상자산을 ①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입 또는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한 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② 불특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①에 열거한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법제는 널리 가상자산을 포착하여 규제가 미치도록 열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제의 정의와 사뭇 다르다.⁶⁸⁾

일본은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 성질이 비슷한 잡소득(雑所得)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를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소득이 분리과세되지 않아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되므로 글로벌 대비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⁶⁹⁾ 일본의 세제는 자본이득을 인정하지 않고 잡소득으로 분류하는 까닭에 다른 투자자산 사이의 손익통산을 허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이월공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서 기본공제 금액은 20만엔이다.

일본은 가상자산 취득 태양에 따른 과세 여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채굴과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는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한 이득의 발생 시점을 가상자산 취득 시점으로 보고 과세한다. 하드포크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매각할 때 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한다.

4. 독일의 가상자산 과세 법제

독일은 별도의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는 않고 지침을 통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독일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보유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과세체계를 달리한다. 장단기의 기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1년이다. 독일은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비과세하며, 1년 이하의 기간 단기 보유한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과세한다. 단기보유 기타소득 과세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기본공제 금액은 600유로다.

일본의 법제는
널리 가상자산을
포착하여
규제가 미치도록
열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제의 정의와
사뭇 다르다.

68) 자금결제법 제2조 제14항 제1호 및 제2호. 일본의 정의 규정은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보다 훨씬 간명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69) 김갑래(2022), p. 7 참고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공통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섭하는
과정이
탄력적이다.

5. 소결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공통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섭하는 과정이 탄력적이다. 미국, 영국은 국세청의 지침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자산과 거래 형태를 포섭한다. 우리나라 법제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도 가상자산을 열린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행정부의 지침이나 법률해석을 통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일본이 에어드롭, 하드포크, 스테이킹 등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대한 과세 대응을 신속히 이행하고 있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와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V. 시사점 - 유예기간 동안 준비할 사항들

세계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추세를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 논쟁이 정리되고,⁷⁰⁾ 아울러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⁷¹⁾과 같은 관계 법령이 정비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및 과세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큰 줄기의 방향은 그렇고 세부적인 준비 사항도 적지 않다. 본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유예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별 쟁점에 관하여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되, 조세조약, 세무조사 등과 같은 예외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사례에 대한 의견은 유예 또는 폐지된 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필자의 생각임을 밝혀둔다.

70) 2025. 1. 1.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4. 12. 10. 국회 의결로 폐지됨에 따라 금융 과세의 기본 방향성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일단락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논쟁은 여전히 재점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한편 이 논쟁은 가상자산 과세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71) 해당 법의 제정으로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여부,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가상자산 사이의 관계, 그에 따른 과세상 취급 방법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1.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보고 체계의 확립

사례 4

한국인 甲이 미국의 중앙화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영국인 A에게 가상자산 이더(ETH)를 팔아 1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국세청은 甲에게 과세할 수 있는가?

→ 甲의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국세청이 이를 과세하기란 실무상 어렵다. 甲이 소득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소득포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앙화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⁷²⁾ 과세자료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 포함되는데,⁷³⁾ 명세서는 반기마다, 집계표는 년마다 제출 의무가 있다.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명령 제도와 명령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소득세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찌 되었든 국내 거래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이 중앙화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국내 거래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는 부족하나마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소득세법」이 국내 관할권을 넘어 타국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해외 거래소의 과세자료의 확보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은 2023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⁷⁴⁾에 납세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포함하고,⁷⁵⁾ 해외금융계좌 총합이 매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다.⁷⁶⁾ 물론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⁷⁷⁾ 그러나 이러한 우회적 방법이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향후 지켜볼 일이다.

국내 거래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이 중앙화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국내 거래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는 부족하나마 마련되어 있다.

72) 「소득세법」 제164조의4

7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74)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된 자산이 그 대상이다.

75) 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제2호 라목 및 마목

76)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77) 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

표 3 최근 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통계

(단위: 명, (조원))

| 구분 | 종합 | 예적금 | 주식 | 가상자산 |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 | 기타 ¹⁾ |
|-------|--------------|-------------|-------------|--------------|----------|----------|------------------|
| 2024년 | 4,957(64.9) | 2,767(20.6) | 1,657(23.6) | 1,043(10.4) | 253(4.8) | 84(2.3) | 543(3.2) |
| 2023년 | 5,419(186.4) | 2,942(22.9) | 1,590(23.4) | 1,432(130.8) | 251(5.2) | 100(2.1) | 593(2.0) |
| 2022년 | 3,924(64.0) | 2,489(22.3) | 1,692(25.1) | - | 208(3.5) | 81(1.4) | 512(1.8) |
| 2021년 | 3,130(59.0) | - (22.4) | - (29.5) | - | - (2.9) | - (0.9) | - (14.7) |
| 2020년 | 2,686(59.9) | - (29.2) | - (24.9) | - | - (2.0) | - (1.3) | - (12.1) |

주 1) 채권, 보험을 의미함

출처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임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근원적 해결 방법은 과세자료 공유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다자-양자조약의 체결과 이를 이행할 새로운 내국법의 제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한 과정일 수 있겠으나 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5

甲이 필리핀의 탈(脫)중앙화거래소⁷⁸⁾(DEX)인 엠블록체인에서 가상자산 이더(ETH)를 스테이킹(Staking)하여 시가 1억 상당의 다른 가상자산을 얻었다면 국세청은 甲에게 과세할 수 있는가?⁷⁹⁾

→ ① 스테이킹을 「소득세법」의 대여로 볼 수 있는지, ② 소득의 인식 시점은 자산취득 시점인지 또는 매도 시점인지 등의 법적 논쟁은 뒤로 물리고,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 측면만을 보면, 앞선 <사례 4>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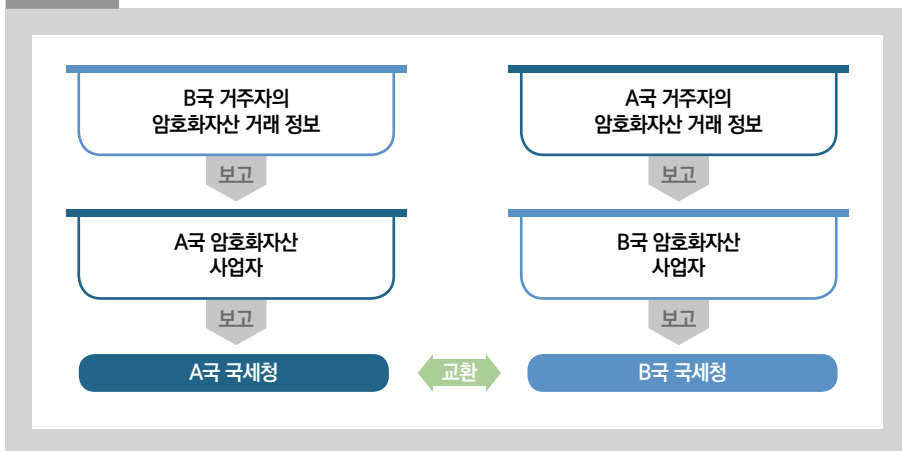
상기 사례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탈중앙화거래소 엠블록체인이 보유하는 甲에 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면, 우선 필리핀 과세 관청의 엠블록체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내국법이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탈중앙화거래소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면 해당 거래소를 국내법 차원에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가 아직 이러한 수준의 제도 정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⁸⁰⁾ 이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⁸¹⁾

78) 미국의 유니스왑 우리나라의 클레이스왑과 같은 거래소가 대표적인 탈중앙화거래소이다.
 79) 사례의 질문은 중앙화거래소의 중개행위 없이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나 대여가 이루어지는 때(소위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Defi) 거래상의 이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80) 블록체인미디어 2024. 12. 7.자 기사, 「그래비티(GRVT), 버뮤다 금융청 승인 완료, 세계 최초 규제 승인 DEX로 디파이 제도권 진입 신평탄」,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06526#google_vignette(2024. 12. 8. 접속) 참고
 81) 블록스트리트 2024. 9. 24.자 기사, 「컨슬러 SEC 위원장, 디파이, 증권법 편입 의지 재발표」, <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4092709480292047> (2024. 12. 6. 접속) 참고

우리나라 법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파이 서비스 제공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디파이 서비스 제공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내 외의 어떠한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다. 내국법적 차원에서 탈중앙화거래소가 보유하는 소득자료를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국제적 차원에서 과세자료 공조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특별히 OECD를 중심으로 해결책이 모색 중이다. OECD는 2027년 이행을 목표로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⁸²⁾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⁸³⁾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국가간
과세정보
보고체계의
미흡이다.

그림 2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 개요도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국가 간 과세정보 보고체계의 미흡이다.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과세정보 공유가 없으면, 아무리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되어도 과세 없는 곳으로의 자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논거에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⁸⁴⁾ 유예기간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유예기간 OECD의

82) 소위 카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10일 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였고,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을 하였다.

83) 현재 가상자산의 개념, 디파이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사업자의 범위, 국가 간 교환할 과세자료의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다.

84)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지갑을 활용한 P2P 거래의 경우, 현행 제도적·기술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한계가 과세 유예의 핵심 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가상자산
출현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과세상 대응을
기울이는 자산은
대체불가능
토큰(NFT)이다.

정책 수립 단계별 보조를 맞춰 국내적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 특별히 디파이서비스 사업자의 제도적 편입 방안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 디파이 서비스에 등록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서비스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⁸⁵⁾ 아울러 이것은 국내적으로 보면 가상자산사업자⁸⁶⁾ 범위에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한 준비 작업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소득 유형의 포착

사례 6

甲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 이더(ETH) 10개를 보유하고 있음을 스톱샷으로 증명하여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클래식(ETC) 20개를 에어드롭⁸⁷⁾으로 취득하였다. 국세청은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과세할 수 있는가?

→ 에어드롭을 통해 받은 행위를 양도나 대여로 포섭하기 어려워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과세는 불가하다.

새로운 소득 유형의 포착은 두 가지 점을 살펴야 한다. 첫 번째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해당 자산을 법의 제도권 내로 편입할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가상자산의 새로운 취득 방법과 소득 인식의 문제이다.

우선 새로운 가상자산 출현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과세상 대응을 기울이는 자산은 대체불가능 토큰(NFT)이다. 소득세제에서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은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초안에서 기존 가상통화의 개념을 디지털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대체불가능 토큰을 포함한다고 밝혔다.⁸⁸⁾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2025년부터 대체불가능 토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⁸⁹⁾ 영국 국세청도 2021년 3월 과세 정책 지침을 통해 암호자산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체불가능 토큰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언급하는 등

85) 디파이서비스 제공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공존한다.

86)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① 매매, ②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87) 에어드롭은 주식의 무상증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특정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는 하드 포크시 새롭게 발행한 가상자산을 기존 코인 보유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마케팅 목적으로 자주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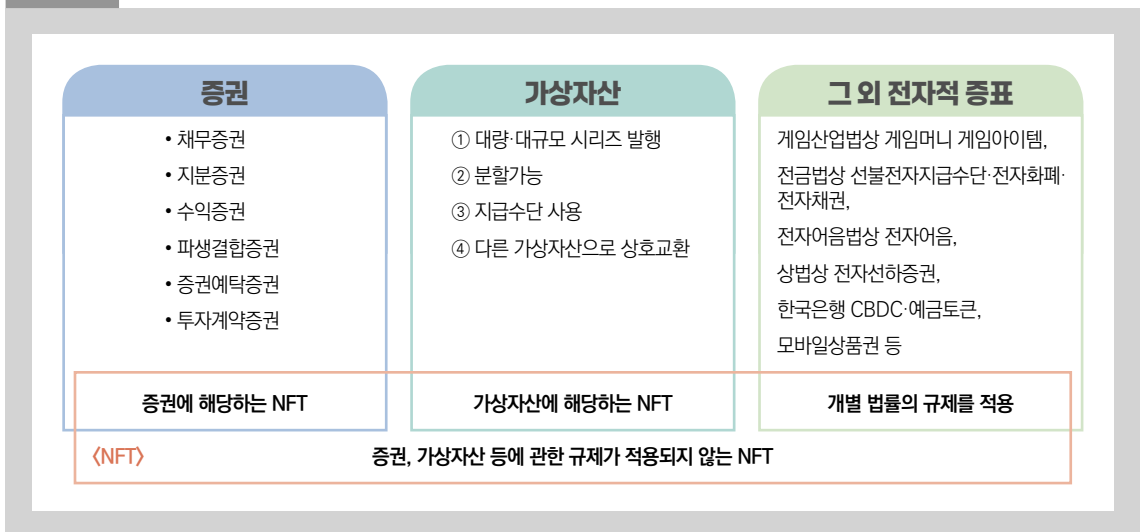
88) Form 1040 2022 Draft 참고

89) 디지털투데이 2024. 7. 1.자 기사, 「미국세정,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안 공개, 2025년부터 적용」,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320\(2024. 12. 7. 접속\)](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320(2024. 12. 7. 접속)) 참고

NFT 과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나라 법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⁹⁰⁾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NFT가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이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여 대체불가능 성질이 사라진다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⁹¹⁾ 그러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NFT의 기능상의 분류에 따른 법령 적용을 위한 일반적 수준의 지침에 불과할 뿐, NFT 본연의 독자적 법적 성질을 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본래적 성질을 가지는 NFT 거래를 통한 소득 과세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있다. 그러므로 유예기간 NFT와 같은 아직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⁹²⁾

그림 3 금융위원회의 증권, 가상자산, NFT 관계도



출처 금융위원회,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유예된 「소득세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가상자산의 취득 방법과 소득 인식의 문제가 있다. <사례 6>의 에어드롭의 법적 성질은 증여에 가까우며, 「소득세법」이 예정한 행위 태양인 ‘양도’나 ‘대여’가 아니다. 따라서 에어드롭은 「소득세법」이

90) 우리나라 법은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와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91) 금융위원회,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참고

92) 방법상으로 NFT를 가상자산 범위로 포섭하되, 소득인식 시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과세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정비해야 한다.

다툼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예된
「소득세법」이
새로운
가상자산
취득유형에
대한 정치한
규정 없이
‘대여’라는
단일한 행위
태양으로
몽뚱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거래 태양으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과세는 불가하다.⁹³⁾ 이처럼 과세상의 법적 공백과 과세 관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새로운 거래 유형의 출현에 따른 법 해석상 문제의 야기와 함께 분쟁을 낳을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 취득 방법과 소득 인식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개념으로는 하드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렌딩 등이 있다. 그러나 유예된 「소득세법」은 이러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해석 방향을 담아내지 못한다. 예컨대 다음의 <사례 7>을 생각해 보자.

사례 7

한국인 **미이**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00개의 이더(ETH)를 스테이킹(Staking) 하여 이자로 5개의 이더를 받은 경우, 이자로 받은 5개의 이더에 대해서 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을 것인가?

→ 스테이킹은 「소득세법」상의 ‘대여’로 보이지만, 법률해석을 놓고 법적 분쟁의 소지는 다분하다.

<사례 7>에서 국내 학계에서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가상자산의 통화로서의 성질을 강조하여 이자로 얻은 가상자산을 이자나 배당으로 보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이다.⁹⁴⁾ 둘째는, 이를 「소득세법」이 예정한 행위 태양인 대여의 일종으로 보고 이자로 얻은 가상자산을 취득 시점 시가로 계산하여 개정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⁹⁵⁾ 셋째는, 이는 「소득세법」상 대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 시점에는 과세할 수 없고 취득원가를 0으로 하고 향후 이자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소득을 인식하자는 주장이다.⁹⁶⁾ 넷째는,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추가 가상자산을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고 향후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이다.⁹⁷⁾ 필자는 두 번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나머지 주장이 나름의 합당한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예된 「소득세법」이 새로운 가상자산 취득 유형에 대한 정치한 규정 없이 ‘대여’라는 단일한 행위 태양으로 몽뚱그리고 있

93) 다만,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경품의 일종으로 보아 총합소득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에어드롭을 가상자산 거래 형태로 보아 과세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이 있다.

94) 대표적으로 이은미·윤태화,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2023, p. 179, p. 184 참고

95) 호주와 미국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 문헌으로는 장기용,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세무회계연구』, 2020, pp. 71~97

96) 안성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연구」, 『회계저널』, 2024, p. 101

97) 정유석,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21, pp. 34~35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해석을 놓고 야기되는 법적 분쟁 가능성은 스테이킹 외 하드포크, 렌딩, 마이닝(채굴)⁹⁸⁾ 등 새로운 개념의 적용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유예 기간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포섭과 새로운 취득 유형과 소득인식 시점 등을 법령과 행정규칙에 세분화하여 담아내는 정밀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

3. 과세 형평성의 고려

사례 8

유예 또는 폐지된 「소득세법」을 전제한다.⁹⁹⁾ 甲은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여 2억원의 소득을 얻었다. 반면 乙은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솔라나(SOL)를 매도하여 2억원의 소득을 얻었다. 다른 손익이 없다면, 甲과 乙이 납부할 세금은 얼마인가?

→ 甲은 3,300만원 (2억-5천=1억5천×0.22), 乙은 4,345만원 (2억-250만×0.22)

가상자산 소득의 성질을 규명하고 어떻게 과세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진대, 과세 형평성의 훼손은 학계가 현행 「소득세법」 과세체계 중 가장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다. 학계 의견은 분분한데, 대체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의 일종으로 보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 논지는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질이 주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¹⁰⁰⁾

가상자산의 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을 고려하면, 다른 투자자산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유예된 「소득세법」에 <사례 8>을 적용하면,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적지 아니하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세액 차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설계한 가상자산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고려하면, 과세 형평성은 더 훼손된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포섭과 새로운 취득 유형과 소득인식 시점 등을 법령과 행정규칙에 세분화하여 담아내는 정밀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

98) 소득의 인식 시기의 문제가 채굴에 있어서 발생한다. 자세한 논의는 지면의 한계상 생략한다.

99)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사례이다.

100) 당연히 이에 대한 비판적 논지도 존재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는다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사례 9

앞선 (사례 8)에서 과세연도의 직전년도에 甲은 주식투자자, 乙은 가상자산투자자로 5천만원 손실이 있었다면 甲과 乙이 납부할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甲은 2,200만원 (1억5천-5천=1억×0.22), 乙은 4,345만원

위의 (사례 9)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허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즉,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과세 연도 이전에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받지 못한다.¹⁰¹⁾ 아울러 가상자산 기타소득은 과세 연도 가상자산 사이의 손익통산은 허용하나, 다른 금융자산의 손익을 통산하지 못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전체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이러한 점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자와 다른 금융상품 과세 대상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모두 제도 정비의 시간이 확보되었으므로 유예기간 납세자 사이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예된 「소득세법」과 같이 가상자산의 독자적 과세체계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손익통산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의 상향과 결손금 이월공제의 재설계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¹⁰²⁾

4. 기타 - ICO 인정 및 세무행정상의 문제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1단계 법률이라면 향후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계획되어 있다. 지금 단계에서 계획 중인 법률의 내용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독자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은 가상자산공개(ICO) 절차를 규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특히 증권성 인정 여부와 과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101) 미국, 영국, 독일은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일본은 허용하지 않는다.

102)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계획대로 시행하되,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이유도 과세 형평 문제와 무관치 않다.

만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인정받는다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¹⁰³⁾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될 「가상자산 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이 조화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유예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¹⁰⁴⁾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혼란을 최소화할 대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유예의 이유로 지적인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법제 정비 못지 않게 세무행정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가상자산의 거래 형태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가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연동하도록 하는 상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직은 자동화된 과세자료 확인 시스템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예기간 이러한 소득자료 파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유예기간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세무행정상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무행정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VI. 결론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 쪽으로 가닥 잡힌 후 이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상당하지만,¹⁰⁵⁾ 유예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¹⁰⁶⁾ 본고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유예된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들여다보았는데, 제도적 허점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조심스럽게 이제는 유예에 대한 평가보다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103) 증권성을 인정받으면 거래소는 모두 상장폐지가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업자도 존재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104)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국내 문헌으로는 이정수(2022) pp. 68-84 참고

105) 가상자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모든 준비가 완결된 채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과세 후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청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106) 한경 코리아마켓 2024. 11. 28.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81966g>(2024. 12. 7. 접속) 참고. 해당 기사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법제가 차용한 일본의 법제는 실패한 법제라고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법은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는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학의 관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지 못하여 많은 부분을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맡기고 있다. 쟁점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적 분쟁으로 변질 요소들이다. 유예기간 동안 법은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모두 현행 「소득세법」이 안고 있는 사법적(司法的) 분쟁의 씨앗들이다. 법제적 측면 외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세무행정상의 시스템 구축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충실히 활용하여 다음 세법 개정안에서 관련 논의가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권민경,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디파이(DeFi)의 활용가능성』, 이슈보고서 21-24, 자본시장연구원, 2021.
- 금융위원회,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2024. 6
- 길용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8권 제4호, 한국조세법학회, 2023. 12.
- 김갑래,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이슈보고서 22-23, 자본시장연구원, 2022.
- 김자봉,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 박선영, 「DeFi의 현황과 향후 규제방향」,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법경제학회, 2022.
- 안성희,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연구」, 『회계저널』 제33권 제3호, 한국회계학회, 2024.
- 이경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 이은미·윤태화,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 이정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 이정수, 「토큰 이코노미(Token Economy)의 입법과제」, 『금융법연구』, 2022.
- 장기용,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세무회계연구』 제64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 정승영,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3.
- 정유석,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9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 천창민,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적 연구 - 탈중앙화거래플랫폼(DEX) 현상 및 법적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2022.
- 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참고문헌

Apolline Blandin et al.,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3/2019, 2019.

HMRC, *Internal manual: Cryptoassets Manual*. August 21, 2023.

OECD,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Action 1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2014. 9.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2. 판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20936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3.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

『한경』, 2024. 6. 25.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50754g>

『디지털투데이』 2024. 7. 1.자 기사,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320>

『블록스트리트』 2024. 9. 24.자 기사, <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4092709480292047>

『한경 코리아마켓』 2024. 11. 28.자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81966g>

『블록체인미디어』 2024. 12. 7.자 기사,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06526#google_vignette

정책토론포트



미래를 설계하는 조세·재정 정책토론회

미래를 설계하는 조세·재정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미래를 설계하는 조세와 재정 -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의 비전
- 일 시 2025년 1월 17일 (금), 15:00 ~ 17:3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프로그램

<1부> 국가 발전을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현재와 미래

15:00 ~ 15:10 **개회식**

개회사 **이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최광** |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성균관대 국정대학원 석좌교수
최홍식 | 前 금융감독원 원장

15:30 ~ 15:40 **기념촬영**

15:40 ~ 16:40 **주제발표**

발표1 **재정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발표2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토론 **좌장 홍범교** |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정훈 |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박기백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엽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성명 가나다순

16:40 ~ 17:00 **휴식**

<2부>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을 위한 조세·재정의 역할 재정립

17:00 ~ 17:30 **라운드 테이블**

주 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을 위한 조세·재정의 역할 재정립 방안**

좌 장 **손원익** | 홍익대학교 디자인·예술경영학부 교수

토론자 **류덕현**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안종석 |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명현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철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성명 가나다순



발표 1

재정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 본 연구는 정치적 유인구조로 인한 수도권 집중 경향성과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된 균형발전특구의 경제적 효과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시도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주기에 따른 재정지출 순환현상이 수도권(경기)의 경합지역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경향성은 야당 의원의 지역구보다는 여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국회의원 선거주기에 따른 분야별 지출의 추이 변화는 '사회복지' 지출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 또한 본 연구는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중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가능한 특구 중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특구의 경제효과를 살펴봄

- 본 연구의 지역기반 특구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균형발전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각종 특구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순증의 지역 발전이라기보다는 '옆 지역의 인구나 자원을 잠시 끌어오는 정도'로 나타나 특구 정책효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본 연구결과는 국회의원 선거주기에 따른 지역 간 재원배분 경향성은 수도권 집중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므로 지역기반 재원배분의 원칙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 지역기반 '특구'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역시 정치제도와 관련 있으며, 특구 지정의 정치적 유인을 축소하고 경제성과 중심의 전환 및 지속적 성과 평가와 정책 환류 시스템의 마련 등 정책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함

토론 1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선거 전후 재정지출의 경합지역배분 경향성과 균형발전재원의 성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구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함
- 특히 수도권 재정집중이 경제성장 이외에 유권자 정치수요에 대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은 학술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패널회귀분석에서 경기 지역의 경우 경합 선거구는 선거기간에 국고보조금이 약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을 둘러싼 전략적 국고보조금 배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작지 않은 표본 크기에도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아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유사한 정치적 특징을 보이는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인 인천에서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임
- 2008년 이후 여당이 경합 승리한 선거구에서 선거기간에 국고보조금이 9%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원배분의 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함
- 다만 이는 연구의 메인 테마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임
- 경합선거구의 경우 선거기간에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1.6% 정도 증가하지만, 다른 분야 보조금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은 복지지출이 정치적 자원배분의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증거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은 정치적 유인구조에 따른 수도권 자원 집중화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음

- 패널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자원과 생산요소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보다는 지역 내 이동이나 재편성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함
- 다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나 지역내 총생산이나 투자의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토론 2

김정훈 |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 지방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사실상 이전재원인 지방세를 합할 경우 300조원이 넘는 규모임
-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방 이전재원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재정정책 분석이라 할 수 있음
- 이자율, 환율 등 통화금융 정책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제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통한 전문적,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조세·재정 분야는 그 효과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됨
- 따라서 행정부와 전문성에 바탕을 둔 분석과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혼합(twilight of politics and efficiency)되어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점이 조세·재정분야의 중요한 특징임

- 즉 조세·재정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중요함
- 조세·재정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교한 실증적 분석이 많지 않으므로 그만큼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국회의원 선거 경합도가 경기도에서 뚜렷하고 복지지출 측면에서 뚜렷하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임
- 다만 복지지출이 SOC에 비하여 특정 계층·지역에 대한 선택적 지출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증분석 결과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경기도의 재정이 분석 기간 동안 다른 시도에 비하여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토론 3

박기백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본 연구는 정부간 재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 정치가 정부 세입 또는 지출에 미치는 대표적인 예시로 보수정부는 감세를 하고, 이후 집권한 진보정부는 지출 확대 경향이 있는데 최근 정권 교체가 빈번해지며 정부 부채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임
- 정부간 재정에 있어서는 경합지역(swing state)에 정부 보조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연구는 균형발전재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 보조금 및 조세지원을 포함시키고 있음

-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커진다는 것인데 다만 그 크기는 경기도 크지만 유의수준을 감안하면 서울이나 전북이 더 국고보조금이 선거공학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에서 여당 프리미엄도 모든 시점에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도권 집중에 선거가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흥미로움
-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줄이려면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이전 재원도 부가가치세보다는 지역 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개별소비세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균형발전특구의 경제적 효과는 이중차분법을 사용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한(원칙적으로는 무작위 추출한) 표본 간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론은 특구 지정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대체적으로 수공이 가는 결과임
- 지방의 경제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보통 주택가격 또는 인구 이동임
- 따라서 종속변수로는 지방세 수입보다는 주택가격(또는 재산세와 종부세) 또는 인구 순유입 자료를 사용해 볼 만하다고 판단됨

토론 4

박명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정부의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순수하게 경

제적 관점에서 이뤄지기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중요하다고 봄

- 다만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 목적의 정치적 의사결정만은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오히려 경제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대형국책사업(예: 달빛철도, 거제도신공항 등)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주목할 필요
- 국고보조금 배분에 대한 실증분석 관련, 사회복지 분야는 대체로 국가 단위의 의무지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무지출은 성격상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합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기 힘든 구조라고 봄
- 오히려 재량지출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전략적 재원배분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총인구: ('22) 5,167만명 → ('72) 3,622만명, 총인구 30%↓), 현행과 같은 균형발전 명목의 비율적인 재원배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발표 2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19~2021년 3년간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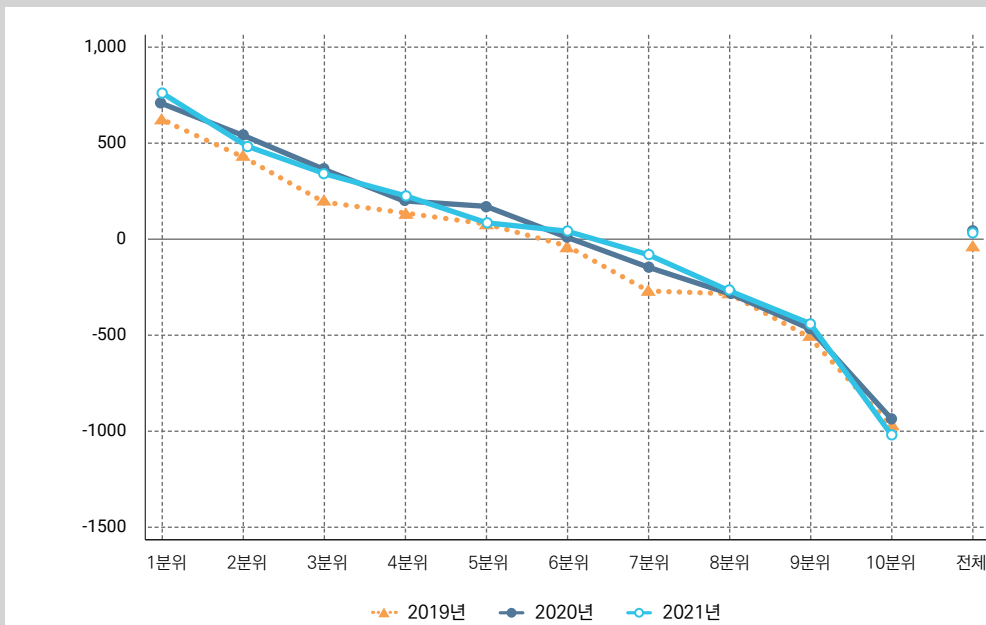
혜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 조세부담은 소득세, 재산세 등의 직접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포함함
- 재정 수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연금 외 현금성 복지급여, 그리고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함
-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가계를 연금후소득(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소득분위별 순수혜를 추정한 결과,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수혜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모든 분석 대상 기간에 소득 1~5분위는 순수혜 계층이고 소득 7~10분위는 순부담 계층이며, 특히 소득 9분위 대비 10분위의 순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소득 6분위는 2019년 순부담 계층에서 2020~2021년 순수혜 계층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적으로 가계는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2019년에는 순부담하였지만 2020~2021년에는 순수혜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 수혜, 부담 등을 2020년 소비자물가수준으로 실질화하고 가구원 수를 통제하기 위해 균등화하여 살펴보면 2019년에는 56만원을 순부담하였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만원과 23만원을 순수혜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2019년에는 없었던 코로나19 지원금이 2020년과 2021년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등의 형태로 가계에 지급된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한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2019년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021년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대체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데에는 주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과 기초연금 확대와 같은 현금성 복지급여의 증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코로나19 지원금은 2021년과 2022년의 지니계수를 각각 1.73%와 1.23% 개선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폭넓은 소득계층을 지원한 코로나19 지원금의 예산 대비 효율성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생계급여는 예산 1조원당 지니계수를 0.19% 개선했지만, 코로나19 지원금은 0.11% 개선하는 데 그침
- 이러한 차이는 소득 불평등도를 10분위 배수로 측정할 때 더 커지는데, 같은 해 생계급여는 예산 1조원당 10분위 배수를 3.75% 개선했지만, 코로나19 지원금은 0.72% 개선하는 데 그침

그림 연도별·소득분위별 순수혜 금액 비교

(단위: 만원)



출처 오중현(“조세 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p. 100)의 [그림 V-4]

표 분배지표별 생계급여 vs 코로나19 지원금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 분배 지표 | 구분 | 연도별 분배지표 | | 연금후소득 대비 증가율(효과성, %) | | 예산 1조원당 연금후소득 대비 증가율(효율성, %) | |
|----------|---------------|----------|---------|----------------------|----------|------------------------------|---------|
|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지니 계수 | 연금후소득 | 0.3705 | 0.3708 | - | | - | |
| | (+) 생계급여 | 0.3669 | 0.3668 | -0.9785 | -1.0809 | -0.1846 | -0.1896 |
| | (+) 코로나19 지원금 | 0.3641 | 0.3663 | -1.7341 | -1.2264 | -0.1213 | -0.1115 |
| 10분위 분배율 | 연금후소득 | 0.3999 | 0.4040 | - | | - | |
| | (+) 생계급여 | 0.4073 | 0.4122 | 1.8477 | 2.0286 | 0.3486 | 0.3559 |
| | (+) 코로나19 지원금 | 0.4138 | 0.4141 | 3.4663 | 2.5051 | 0.2424 | 0.2277 |
| 5분위 배수 | 연금후소득 | 9.5214 | 9.0446 | - | | - | |
| | (+) 생계급여 | 8.9465 | 8.4522 | -6.0384 | -6.5499 | -1.1393 | -1.1491 |
| | (+) 코로나19 지원금 | 8.9228 | 8.6542 | -6.2868 | -4.3170 | -0.4396 | -0.3925 |
| 10분위 배수 | 연금후소득 | 26.1153 | 24.1006 | - | | - | |
| | (+) 생계급여 | 20.8129 | 18.9560 | -20.3038 | -21.3463 | -3.8309 | -3.7450 |
| | (+) 코로나19 지원금 | 22.7295 | 22.1880 | -12.9650 | -7.9360 | -0.9066 | -0.7215 |

주 1. 효율성 추정 시 생계급여 예산은 2020년 5.3조원, 2021년 5.7조원, 코로나19 지원금 예산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인 14.3조원과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인 11.0조원으로 가정

2. 코로나19 대응 추가적인 지원금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지원금의 효율성은 과대평가된 수치

출처 오종현(「조세 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 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pp. 140-143)의 <표 V-25>-<표 V-28> 및 저자 계산

- 이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소득재분배가 주요한 정책 목표라면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함

용이 크게 바뀐 점을 고려할 때, 2019~2021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 기간 조세부담과 재정 수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점검하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라고 생각함

● 많은 항목의 재정 수혜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범위를 좀 더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일자리나 청년 취업 관련 사회지출도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가계가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들도 준조세 형태로 조세부담 항목에 편입될 수 있다면 좋을 것임

- 가구소득 균등화의 구체적 방법 선택이 분석 결

토론 1

김유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조세와 재정정책의 cost-benefit 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주제임
- 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공표하는 재정패널조사는 이러한 분석 목적에 특화된 자료로 오랫동안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코로나19 전후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규모와 내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복수의 방식을 이용하고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보편적인 현금지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이 누진적인 소득세나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생계급여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한 강조가 필요해 보임
- 이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좋겠음
-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재정 규모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에,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 상대적인 의미의 재분배 개선효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분석결과에서 재산세 및 종부세가 역진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 동시에 종부세 강화와 더불어 이러한 역진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함
- 자산과세의 역진적인 현상이 소득과 자산 간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할 수 있음
- 다만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됨. 소득분위별 직접세 분포를 보면, 2021년 5분위 가구의 재산세 및 종부세 세액이 비정상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원인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토론 2

김정훈 |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 본 연구는 미시 데이터를 통하여 조세·재정 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조세·재정 정책의 핵심적 주제를 잘 분석하였다고 생각됨

- 조세·재정 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일반 국민과 국회의 정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임
- 보고서의 결론이 지니계수, 누진성, 역진성으로만 표현되었는데, 보고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금액 기준으로 일반인들에게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전달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임

토론 3

박기백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 및 재정지출로 인한 재분배효과를 다루고 있음. 물론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작업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전후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라고 판단됨
- 특히 해당 시점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지원 등을 대규모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궁금할 수 있음
- 연구의 결론은 시장소득의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며, 정부의 지원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임
-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큰 제도가 교육 및 보육서비스이며, 기초연금과 의료서비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본질적으로 규모와 누진도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각의 누진도를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재산세가 소득에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재산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 즉 자본이득은 경제이론상 소득이지만 서베이자료에서는 소득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론이라고 판단됨

- 대체적으로 무난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7분위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기여금은 변화가 없지만 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이유, 사회적 현물이전이 크게 증가한 이유 등은 좀 더 분명히 밝혀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더 나아가 코로나 이전의 시장소득 또는 최종소득 수준이 되려면 정부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토론 4

박명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Tax-Benefit Model의 구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면 좋겠음
- 동 모형은 정부가 새로운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동 정책이 가구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빈곤 감소나 소득재분배 등과 같은 정책 목표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 여러 정책 옵션을 동시에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동 모형에 투입되는 기반 자료가 포괄적이라면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이 재정수입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동 모형에서 반영되는 제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좋겠음
- 가급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기적·반복적 조세·재정지출 정책을 반영할 필요

| 구분 | 조세부담 | | 복지혜택 | |
|------|---------|----------|---------|----------|
| | 주기적·반복적 | 불규칙적·단발적 | 주기적·반복적 | 불규칙적·단발적 |
| 중앙정부 | 대부분 반영 | 대부분 미반영 | 대부분 반영 | 일부 반영 |
| 지방정부 | 일부 반영 | 대부분 미반영 | 일부 반영 | 대부분 미반영 |

- 다양한 소득개념 분류 과정에서 사적이전소득은 반영하고 있는데 사적이전지출의 반영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조세부담 등의 원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응답한 값과 소득에 법정보험료율을 곱한 값의 일치성 검증 및 공적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간의 일관성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면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소득세 미시신고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용하여 원자료 활용이 합리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 예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상 소득세와 10분위 직접세 비교

| 총급여 구간 | 평균 총급여 | 결정세액 | 10분위 | |
|--------|---------|-------|-----------|-----------------|
| 6천~8천 | 6,920만원 | 380만원 | 시장소득 | 8,834만원 |
| 8천~1억 | 8,880만원 | 729만원 | 직접세 (소득세) | 421만원 (약 300만원) |

- 기반 자료인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2019년과 2020년에 단절되었기에 2019~20년과 2020~21년의 변화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자료 단절의 문제는 7분위 이후 분위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시장소득이 높음에도 직접세

- 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동 기간 제도적으로 직접세를 낮추는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임
- 향후 연도 간 비교보다는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변화(부모급여 도입, 소득세 세율구간 인상 등)의 정책적 효과를 제시해 주면 좋겠음
 - 1분위에 속한 고령자의 경우, 소비를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dissaving을 통해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득(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클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 대비 비중이 높을 수 있음 → 이런 현상은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역진적으로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분석대상을 은퇴를 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고, 면세 품목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교육·보육서비스, 기초연금, 의료급여, 소득세, 생계급여 등의 순”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함
 - 소득 1, 2분위에는 고령자가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생계급여가 보충성의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는 그만큼 감소하여 생계급여의 재분배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 대부분 생계급여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재정패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생계급여 수급자가 과소표집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 재산세·종부세가 다단계 누진세율로 부과됨에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한 충실한 설명도 필요함
- 소득 1, 2분위에 속한 고령자가구는 현재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젊은 시절 축적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고, 은퇴한 가구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역진적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
 - 향후에는 다른 나라의 분석사례를 함께 소개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좋겠음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 ◆ 미국 재무부(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5년 1월 8일, 저소득층 거주지역 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 프로그램(Clean Electricity 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 Amount Program)¹⁾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²⁾을 확정하여 발표함^{3),4)}
 -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연소(combustion)와 가스화(gasification) 없이 청정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구축에 투자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⁵⁾
 - 기존의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IRC §48E)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투자 금액의 최소 6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임
 - 위의 프로그램은 청정 전력 생산 시설의 위치⁶⁾에 따라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을 10퍼센티지 포인트(percentage point) 또는 20퍼센티지 포인트 증가시킴
 - 최종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정 전력 생산 기술과 시설의 범위를 확장한바, 기존의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뿐만 아니라 수력, 지열, 해양유체동력, 그대로 원자력 생산 기술 및 설비까지 포함됨
 - 저소득층 거주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대상을 확장하여 더 많은 가정이 청정 전력 생산 시설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청정 전력 생산 시설이 주변 지역에 제공해야 하는 금전적인 가치를 명확히 함
 - 신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에게 청정 전력 생산 시설 구축 및 투자 관련하여 우선권을 부여함
 -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 전력 추가 세액공제는 오랫동안 소외되고 방치되었던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발자들이 지

1) 관련 법 조문은 「내국 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 §48E(h)

2) 최종 규정은 시행령과 같으며 법적 효력이 있음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to Expand Clean Energy Investments and Lower Costs in Low-Income Communities," 보도자료, 2025. 1. 8.,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75>, 검색일자: 2025. 1. 20.

4) IBFD, "Finalized IRS Regulations Boost Clean Energy Access, Tax Credits for Low-Income Communities," 2025. 1.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13_us_1.html, 검색일자: 2025. 1. 20.

5) Federal Register, "Guidance on Clean Electricity 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 Amoun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3/2025-00331/guidance-on-clean-electricity-low-income-communities-bonus-credit-amount-program>, 검색일자: 2025. 1. 20.

6) 위치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함: 1. 저소득층 거주지, 2. 아메리카 원주민 영토, 3. 저소득층 거주지 개발 프로젝트 현장, 4.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 프로젝트 현장

역사회의 경제와 에너지 관련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표된 최종구

정은 모든 미국인이 청정 에너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룩셈부르크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액공제 규정 발표

-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12월 23일,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률「다국적기업그룹과 대규모 국내그룹에 대한 최저한세에 관한 2023. 12. 22. 법률」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발표함⁷⁾
- 이전 가능하고, 과세관청과 조정 가능한 세액공제만이 구성기업의 적격 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며, 환급·이전·조정할 수 없는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와 관련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는 기

본 공제 연도의 손익 계산에 세액공제의 액면금액을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함

- 세액공제가 자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자산 가치의 공제 또는 소득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세액공제가 기본 공제 연도 말로부터 15개월 내에 이전된 경우 판매가격이 기본 공제 연도의 이익으로 인식되고, 15개월 후에 이전된 경우 액면금액과 판매가격의 차액이 이전한 회계연도의 손실로 인식됨



독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 시행

- ◆ 독일 연방 하원은 세법 발전 및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에 관한 법안(Steuerfortentwicklungsgesetz)을 2024년 12월 30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동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됨⁸⁾
- 연방의회(Bundesrat)는 2024년 12월 20일에 세

법 발전 및 소득세 과표 조정에 관한 수정 법안 초안을 승인함

- 해당 법안은 독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다양한 조치를 포함했으나,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개인에 유리한 공제액 확대 등

7) IBFD, "Grand-Ducal Regulation Determines Rules on Tax Credits, Qualifying Holdings for Pillar Two," 2025. 1.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3_lu_2.html, 검색일자: 2025. 1. 13.

8) IBFD, "Revised Bill on Further Developing Tax Law, Adjusting Income Tax Brackets Enters Into Force," 2025. 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6_de_1.html, 검색일자: 2025. 1. 13.

의 조치를 포함함

- 납세자의 기본 공제액을 2025년에는 1만 2,096 유로,⁹⁾ 2026년에는 1만 2,348유로¹⁰⁾로 인상함
- 2025년과 2026년도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정되며, 소득세 등급 중 최고 구간인 27만 7,826유로¹¹⁾만 변동 없이 유지 됨
- 자녀 공제액(Kinderfreibetrag)을 2025년에는 3,336유로,¹²⁾ 2026년에는 3,414유로¹³⁾로 인상함
- 자녀 한 명당 월별 아동 지원금(Kindergeld)

을 2025년에는 250유로¹⁴⁾에서 255만유로¹⁵⁾로, 2026년에는 259유로¹⁶⁾로 인상할 예정임

-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 면제 한도를 상향함
- 개인의 경우 2025년도는 1만 8,130유로¹⁷⁾에서 1만 9,950유로¹⁸⁾로 2026년에는 2만 350유로¹⁹⁾로, 부부 또는 동반 납세자의 경우 2025년도에 3만 6,260유로²⁰⁾에서 3만 9,900유로²¹⁾로 2026년에는 4만 700유로²²⁾로 인상함



스위스

주거용 부동산세 개정안 관보 게재

- ◆ 스위스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는 2025년 1월 9일, 주거용 부동산세 개정안(No. FF 2025 23)을 관보에 게재함^{23), 24)}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연방직접세는 연간 지출을 반영하여 산정

9)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824만원임

10)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862만원임

11)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4억 1,911만원임

12)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503만원임

13)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514만원임

14)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7만원임

15)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8만원임

16)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9만원임

17)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2,733만원임

18)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008만원임

19)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3,068만원임

20)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5,468만원임

21)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6,016만원임

22)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6,137만원임

23) Fedlex Die Publicationsplattform des Bundesrechts, <https://www.fedlex.admin.ch/eli/fga/2025/23/de>, 검색일자: 2025. 1. 16.

24) Bloomberg Law News, "Switzerland Gazette's Law Amending Residential Property Taxation System," 2025. 1. 1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AJ6MHM4000000?bc=W1siU2VhcmNoICh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FrY2gvcmVzdWx0cy81ODFkNmNmMzZiZGVlODdkYzhiYmE4Y2EyMWEwNzU5OCJdXQ-951211850a151f58d45cd0aeb6ccfdaf0957d9fd&criteria_id=581d6cf36bdee87dc8bba8ca21a07598&search32=7x637HTep9CvbiWPoqkEcq%3D%3D1NPx06nLeF-RijjPPRP2MttbiiHfchAx75VGSh1wcTnJyVgD_ADXEqxCAHxxhLUiwi_1B43er_o9QsHKIEmw%3D%3D, 검색일자: 2025. 1. 15.

- 특정 행정 비용과 역사적 기념물 복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개인 소유의 임대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나열
- 첫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납세자는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만스위스프랑²⁵⁾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정안은 의회에서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투표 마감일은 2025년 4월 19일임



이탈리아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규정 적용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 명령 발표

- ◆ 이탈리아는 EU의 VAT 지침(2020/285)에 따라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제도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입법 명령을 발표함²⁶⁾
- 해당 입법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VAT 제도의 확대로 기존에 이탈리아 내에서만 적용되던 소규모 기업 특별 VAT 제도를 EU 회원국 간, 국경간 거래를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에도 확대하여 적용함
- 2025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이탈리아 내 과세 대상자는 세무 당국에 정해진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맞춤형 식별 번호를 부여받아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적용 조건은 현재 및 이전 회계연도 기준 모든 EU 회원국 내 연간 총매출액이 10만유로²⁷⁾ 이하이며, 이탈리아 내 전년도 매출이 8만 5천유로²⁸⁾ 이하여야 함
- 이탈리아에 내에 소재하는 과세 대상자도 다른 EU 회원국에서 특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관련 제출 절차와 필요한 내용을 규제함
- 또한, 부가가치세 개정 지침에 따라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거나 가상으로 제공되는 문화, 예술, 스포츠 이벤트는 고객이 이탈리아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경우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됨

25) 2025년 1월 16일 환율 기준 약 1,597만원임

26) IBFD, "Tax Authorities Issue Implementing Rules on Amended VAT Scheme for Small Enterprises," 2025. 1.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7_it_2.html, 검색일자: 2025. 1. 13.

27)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억 5,033만원임

28) 2025년 1월 13일 환율 기준 약 1억 2,778만원임



스페인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 승인

- ◆ 스페인 정부는 2024년 12월 23일, 2024년 종료될 예정이던 다양한 세금 제도를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승인함²⁹⁾
 - (법인소득세) 재생에너지 자가 소비시설 또는 화석에너지 대체 설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만유로³⁰⁾ 내에서 자유 감가상각(Free amortization)을 허용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함
 - (개인소득세) 친환경 관련 세제 혜택 제도를 연장함
 - 가정의 난방 및 냉방 수요를 줄이는 작업에 대한 세액공제(20%)와 가스, 석유, 석탄 등 1차 비재생 에너지 소비를 개선하는 공사에 대한 세액공제(40%)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에너지 재생이 수행되는 건물에 대한 세액공제(60%)는 2026년까지 연장함
- 신규로 취득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15%)와 배터리 충전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15%)를 2025년까지 연장함
- (부가가치세)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특별 보상 제도 적용을 제한하는 상향된 매출액 기준(15만 유로³¹⁾→25만유로³²⁾)을 2025년까지 연장함
 - 농업, 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이 아닌 세금의 정산 및 납부 의무가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정부 등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한 보상을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함³³⁾
 - 2025년까지 전년도 수입이 25만 유로를 넘는 경우 특별 보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29) IBFD, "Government Extends Certain Tax Measures Through 2025, Postpones Implementation of Tax on Tobacco, E-Cigarettes," 2024. 1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27_es_1.html, 검색일자: 2025. 1. 14.

30) 2025년 1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956만 5,000원임

31) 2025년 1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510만 9,500원임

32) 2025년 1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518만 2,500원임

33) Agencia Tributaria, "Capítulo 6. Los regímenes especiales en el IVA-Funcionamiento," <https://sede.agenciatributaria.gob.es/Sede/ayuda/manuales-videos-folletos/manuales-practicos/manual-iva-2024/capitulo-06-regimenes-especiales-iva/regimen-especial-agricultura-ganaderia-pesca/funcionamiento-reagp.html>, 검색일자: 2025. 1. 20.



스웨덴

DAC8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 개시

- ◆ 스웨덴 국세청은 2024년 12월 20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2023/2226)의 개정 지침인 DAC8³⁴⁾의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함³⁵⁾
- 해당 법안은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암호화자산 보고, 자동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 개정 및 DAC8의 추가 조항 등에 대한 조치가 포함됨
- (암호화자산 보고) DAC8 및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통합된 체계로 구현되어, 다음의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을 포함함
 - 「암호화자산에 대한 조세 문제에 관한 특정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
 -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법률」
- (CRS 개정) CRS 업데이트를 DAC8에 통합하여 보고 대상 계정 식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CRS의 개정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존 금융 계좌 정보교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 6년간의 이행을 통해 확인된 규제 격차를 해소함
 - 금융 계좌 정보교환을 새로운 암호화자산 정보 시스템에 맞게 조정함
- (DAC8의 추가 조항)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EU 회원국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 및 기타 추가 조항도 함께 포함함
 - 다른 EU 회원국과의 외국 납세자 식별번호 보고 및 교환에 대한 더 엄격한 요건
 - 개인에게 적용되는 150만유로³⁶⁾를 초과 사전 세금 결정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새로운 규정
- 제안된 조치는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공개 협의 기간은 2025년 3월 28일에 종료됨

34) DAC8은 암호화폐 거래 정보교환 및 보고에 관한 조세분야 행정협력지침의 개정지침 이행에 관한 법안임

35) IBFD, "Sweden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Implementing DAC8," 2024. 12.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9_se_2.html, 검색일자: 2025. 1. 10.

36)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억 5,529만원임



덴마크

각종 세법 개정안 관보 게재

- ◆ 덴마크 의회는 2024년 12월 30일, 「법인세법」, 「주식 저축계좌법」 및 「주식이익과세법」 등의 세법 개정 법률 제1619호를 관보에 게재함³⁷⁾
- 법인 등이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에서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폐지를 발표함³⁸⁾
- 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면제는 배당금 분배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함
- 면제 혜택은 포트폴리오 회사로 인정받기 위해 「자본이득세법」 제4조 제c항(aktieavancebeskatningslovens § 4 C)에 명시된 요건³⁹⁾을 충족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적용됨
- 법인이 최초 주식시장 상장 후 7년간 재고자산 기반 과세(inventory-based taxation) 대신 자본금 기반 과세(capitalization-based taxation)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함
- 법인 등은 세무서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세액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tax credits)을 요청할 수 있음
- 2027년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2,500만크로네⁴⁰⁾에서 3,500만 크로네⁴¹⁾로 인상함
- 세액공제 한도의 인상은 특히 연구개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법인 등이 이월결손금을 2025년 기준 약 2,080만 크로네⁴²⁾까지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이월에 관한 규정을 조정할 예정임
- 현행 세법상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한도는 2025 과세연도의 경우 980만크로네⁴³⁾임
- 기준 금액만 변경될 예정이며, 손실 이월에 대한 원칙은 변경되지 않음
- 공제 한도의 인상으로 특히 투자 비용이 높은 기업의 이월 손실이 상쇄가능하게 됨

37) IBFD, "Denmark Gazettes Law Abolishing Taxation of Dividends from Tax-Exempt Portfolio Shares, Other Measures under Entrepreneur Package," 2025. 1.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06_dk_1.html, 검색일자: 2025. 1. 10.

38) 기존 세법에서는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 법인은 배당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함

39) 규제시장 등에서 거래가 허용된 포트폴리오 회사의 주식 보유가치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평균의 85%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0)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억 4,200만원임

41)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0억 5,880만원임

42)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억 6,718만원임

43) 2025년 1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억 5,665만원임



네덜란드

2025년 세금 계획안 승인

- ◆ 네덜란드 상원은 2024년 12월 17일, 재무부 장관이 하원에 제출한 2025년 세금 계획안을 승인함⁴⁴⁾
- 네덜란드 재무부는 지난 2024년 9월, 2025년 세법개정안(2025 Tax Plan)을 발표한 바 있으며, 상원에서 승인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법인세) 법인세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⁴⁵⁾
 - EBITDA 기준 이자공제 한도가 완화되어 이자비용의 20%에서 최대 24.5%까지 공제가능하도록 함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100만유로⁴⁶⁾를 초과하는 채무 면제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Wage tax)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⁴⁷⁾
 - (업무 관련 비용) 2025년에 적용되는 업무 관련 비용제도(werkkostenregeling) 비율은 첫 40만유로⁴⁸⁾에 대해 2%,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1.18%임
 - (환경세) 환경세(environmental tax)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⁴⁹⁾
 - (비행세) 2025년부터 네덜란드 공항에서는 승객 1인당 29.40유로⁵⁰⁾를 부과하며, 2세 미만의 아동과 네덜란드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 승객에게는 비행세를 면제함
 - (산업에 대한 CO₂ 세금) CO₂ 환산 배출량이 면제 대상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CO₂ 환산 톤당 87.90유로⁵¹⁾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EU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44) IBFD, "Netherlands - Upper House of Parliament Approves 2025 Tax Plan Including Amendments to EBITDA-Based Interest Deduction, R&D Incentives," 2024. 12.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2-17_nl_1, 검색일자: 2025. 1. 13.

45)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5 In Depth: Government Publishes 2025 Corporate Tax Change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ax Credits," 2024.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9_nl_2.html, 검색일자: 2025. 1. 13.

46)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억원임

47)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5 In Depth: Government Publishes 2025 Wage Tax and Environmental Tax Figures," 2024.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9_nl_5.html, 검색일자: 2025. 1. 13.

48)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원임

49) IBFD, "Netherlands - Tax Plan 2025 In Depth: Government Publishes 2025 Wage Tax and Environmental Tax Figures," 2024. 1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9_nl_5.html, 검색일자: 2025. 1. 13.

50)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만 4,100원임

51) 2025년 1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만 1,850원임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초안 발표

- ◆ 홍콩 정부는 2024년 12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Globe 규칙)을 채택하고, 홍콩 최저한세 규정(Hong Kong Minimum Top-up Tax, 이하 HKMTT) 도입에 대한 법 초안을 발표함⁵²⁾
- GloBE 규칙은 필라2의 핵심적인 규칙으로 연간 통합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⁵³⁾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GloBE 규칙에 따르면 홍콩의 적격 국내 최저한세 규정(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인 HKMTT가 우선 적용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홍콩 정부는 관할 범위 내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이하 IIR)이 그 다음으로 적용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최종 모기업 관할국이 실효세율 15% 미만인 해외 자회사의 수입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
- HKMTT나 IIR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득 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이하 UTPR)이 적용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구성기업의 관할국으로 과세권을 이전하고, 다른 국가가 UTPR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
- 홍콩 정부는 HKMTT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로부터 과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27~2028년부터 매년 약 150억홍콩달러⁵⁴⁾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함



싱가포르

자발적 정보교환 관련 FAQ 발행

-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싱가포르의 자발적 정보교환 제도(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이하 SEOI)의 지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FAQ를 발행함⁵⁵⁾

52) Tax Note, "Hong Kong Issues Draft Legislation for Global Minimum Tax Regime," Kierra M. Strocko, 2025. 1. 6.,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corporate-taxation/hong-kong-issues-draft-legislation-global-minimum-tax-regime/2025/01/06/7ph2t>, 검색일자: 2025. 1. 13.

53) 2025년 1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254억원임

54) 2025년 1월 1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8,282억원임

55)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FAQs on 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https://www.iras.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faqs-on-spontaneous-exchange-of-information.pdf>, 검색일자: 2024. 12. 16.

- 싱가포르는 2024년 7월 OECD BEPS 프로젝트 참여 회원의 최소 기준 중 하나인 SEOI 참여를 선언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 관할권 내의 관련 당국과 다음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야 함
 - 특혜 제도와 관련한 결정, 이전 가격과 관련된 일방적 사전 가격 책정 합의 또는 기타 국가 간 일방적 결정, 과세 소득의 하향 조정을 규정하는 국가간 결정, 고정사업장 관련 결정, 특수관계인(사) 도관 결정
- 적용 대상은 결정이 적용되거나 특혜적 대우를 받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납세자, 납세자의 직접적인 최종 모회사 등이 됨
 - 이 때 A가 B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C가 A와 B에 대해 각각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A와 B를 SEOI 목적상 “관계인(related)”으로 간주함



인도네시아

일부 사치품 VAT 인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치세 인하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사치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2%로 인상함⁵⁶⁾
- 2021년 10월 29일 공포된 UU HPP(Tax Regulation Harmonization)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의 점진적 인상이 허용되었으며, 2022년 4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에서 11%로 한차례 인상된 사실이 있음
- 이번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안은 당초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적용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세율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하여 일부 사치품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됨
- 2025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공급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됨
 - 고급 식품류(쌀, 과일, 육류, 생선, 갑각류)
 - 고급 서비스(국제적 교육용역, VIP 의료서비스)
 - 가정용 전기(3,500~6,600VA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2월 16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3%의 사치세를 감면할 예정임을 발표함⁵⁷⁾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에 대해 사치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치세를 감면할 예정임
-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6~12%의 사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치세는 최대 9%로 제한됨

56) VAT Calc, "Indonesia luxuries VAT rise 11% to 12% 2025," Jacinta Caragher, 2025. 1. 1., <https://www.vatcalc.com/indonesia/indonesia-vat-rises-to-11-1st-april-2022-12-by-2025/>, 검색일자: 2025. 1. 13.

57) JAKARTA GLOBE.ID, "Hybrid Cars in Indonesia to Get 3 Pct Luxury Tax Incentive," Jayanty Nada Shofa, 2024. 12. 16., <https://jakartaglobe.id/business/hybrid-cars-in-indonesia-to-get-3-pct-luxury-tax-incentive>, 검색일자: 2025. 1. 13.



호주

임대용 건물 개발 인센티브 관련 지침 발표

-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12월 23일, 임대용 건물 (Build to Rent, 이하 BTR) 개발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자격 기준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함⁵⁸⁾
- BTR 개발과 관련한 소유주에 4%의 투자용 부동산 가속 상각 공제가 허용됨
- 건물의 구조적 개선 및 변경을 포함하며, 주택의 증축 또는 변경 및 개량공사로 인해 임대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자격이 유지됨
- BTR 개발 공사가 호주 서머타임(AEDT) 기준 2023년 5월 9일 오후 7시 30분 이후에 시작된 건부터 적용됨
- 관리형 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 MIT)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적격 자금을 15%의 최종 원천징수 양허세율이 적용됨
- 임대형 주택 개발 단지 내 주택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 수입 지급
- 주택과 관련한 자본이득세상의 이득에 기인하는 금액
- BTR 개발 사업 소유주의 회원권과 관련한 자본 이득세상의 이득에 기인하거나 그 일부인 경우
- ◆ BTR 개발 인센티브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적격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함
- 일반 대중에게 임대 가능한 50개 이상의 주거용 건물로 구성된 BTR 개발임
- 주거용 건물이자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이며, 상업 및 주거의 복합용 건물이 아님
- BTR 개발 지역의 주택 및 공용구역을 적어도 15년 이상 단일 기관이 소유하고 있음
- 해당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거나,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함
- 대상 주택 중 최소 10%가 관련 법령의 저가 주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BTR 개발을 선택한 후 15년의 기간 동안 해당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 부당사용세(misuse tax)가 적용될 수 있음
- BTR 개발 부동산의 소유주는 BTR 개발 승인양식(NAT 75663)을 제출하여, 해당 인센티브 적용 선택을 알려야 함
- 개시일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일자 전에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양식을 수령한 날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함

58) Australian Taxation Office, "Build to rent development tax incentives,"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assets-and-property/build-to-rent-development-tax-incentives>, 검색일자: 2025. 1. 13.



OECD

필라1 Amount B 이행을 위한 가격 자동화 도구 발표

- ◆ OECD는 2024년 12월 19일,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와 관련하여 단순화·간소화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필라1 Amount B와 관련하여 가격 자동화 도구(Pricing Automation Tool)와 요약 자료를 공개함⁵⁹⁾
- 가격 자동화 도구는 최소한의 데이터 입력만으로 적용 대상자의 Amount B 산정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를 위해 단순화·간소화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됨
- 가격 자동화 도구는 표준 가격 산정표(Pricing Matrix)의 변경 사항 및 Amount B 조정 기능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정될 예정임
- Amount B 지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관할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 동안 관할국 내 적용 대상자의 범위 내 거래에 대해 Amount B의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포괄적 이행체계의 회원국들이 Amount B의 채택을 여전히 고려 중임
- 요약 자료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Amount B를 적용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포함하여 Amount B의 메커니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1단계는 OECD 이전가격 지침 제1장에서 적절하게 설명된 적격 거래가 Amount B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격 거래를 일련의 정성적·정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함
 - 2단계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표준 가격 산정표 적용 등으로 구성된 Amount B 체계를 적용하여 Amount B 범위 내 적격 거래의 가격을 책정함

59) OECD, "International tax reform: Release of new tools for the implementation of Amount B relat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ransfer pricing rules,"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4/12/release-of-new-tools-for-the-implementation-of-amount-b-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html?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9-12-2024&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5. 1. 13.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 ◆ EU 이사회(경제재정위원회),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 관련 21개 회원국 재정 지출 경로 승인(2025. 1. 21.)¹⁾
- (개요)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시행(2024.4)의 다음 단계로 EU 이사회는 EU 27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첫 번째 중기 재정 구조 계획(순지출²⁾ 경로 포함)을 설정하는 권고안을 채택함
 - (이전) 2024년 10월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에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제출하였고,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기 재정 구조 계획에 관한 평가 보고서³⁾를 발표함
 - (이사회 승인)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평가 보고서의 재정 경로 수치에서 변경 없이 이번 EU 이사회에서 승인
 - ▶ 순지출 경로와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을 승인받은 21개 국가는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⁴⁾이 해당되고, 6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독일)은 계획 제출 지연 등으로 포함되지 않음
- (목적)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은 새로운 EU 경제 거버넌스의 근간으로 회원국들의 개혁 및 투자를 포함한 재정 경로를 담고 있고, 채무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의 촉진에 기여함
 -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위한 단일 운영 지표로서 각 회원국의 순지출 경로는 향후 4~5년 동안 회원국에서 재정정책 수립과 건전한 재정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
- (목표)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은 재정 조정 기간(기본 4년⁵⁾) 종료 시점에 정부 채무를 감소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 (재정 조정 기간 연장) 5개국(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은 조건부로 재정 조정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약속한 개혁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이 필요
- ◆ EU 이사회, 안정성장협약의 초과적자 시정절차 회원

1) EU 이사회,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Council sets fiscal expenditure paths for 21 member states, 2025. 1.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1/21/economic-governance-framework-council-sets-fiscal-expenditure-paths-for-21-member-states/>, 검색일자: 2025. 1. 22.

2) 순지출은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을 의미하고, 총지출에서 이자지출, 주기적 실업수당, 일회성 지출,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11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12. 6., pp. 16-17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4)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5) 4년 혹은 5년(국가별 입법 주기에 따라 다름)

국에 대한 권고 채택(2025. 1. 21.)⁶⁾

- EU 이사회는 7개국(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초과 적자를 시정할 것을 권고함
 - (초과적자 시정절차) EU 국가들은 EU 조약에 따라 GDP 대비 3% 적자 및 60% 채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초과 적자가 발생한 경우 강화된 감독 하에 시정 절차를 시행하여 채무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함
 - (이전 단계) 7개국은 2024년 7월 초과적자 시정절차 시정이 필요한 국가로 결정되었고,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시행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함⁷⁾
 - (권고안) 각 회원국에 대한 수정 예산 경로와 시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EU의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제출한 중기 재정 구조 계획의 각 회원국 목표와 일치함
 - (벨기에) 2027년까지 초과 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2.4%, 2026년 1.9%, 2027년 2.0%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프랑스) 2029년까지 초과 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0.8%, 2026~2028년 1.2%, 2029년 1.1%를 준수해야 함
- (변경) 2024년 11월 집행위 2025년 0.0%, 2026~2028년

1.4%, 2029년 1.3% 권고에서 변경됨

- (이탈리아) 2026년까지 초과 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1.3%, 2026년 1.6%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몰타) 2027년까지 초과 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6.0%, 2026~2027년 5.8%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폴란드) 2028년까지 초과 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6.3%, 2026년 4.4%, 2027년 4.0%, 2028년 3.5%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루마니아) 2030년까지 초과 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5.1%, 2026년 4.9%, 2027년 4.7%, 2028년 4.3%, 2029년 4.2%, 2030년 3.9%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슬로바키아) 2027년까지 초과 적자를 시정하고, 순지출 명목 성장률은 2025년 3.8%, 2026년 0.9%, 2027년 1.6%를 준수해야 함(2024년 11월 EU 집행위 권고와 동일)

◆ EU 통계청, 2024년 3분기 재정통계(재정수지·채무) 발표(2025. 1. 22.)⁸⁾

6) EU 이사회, Stability and growth pact: Council adopts recommendations to countries under excessive deficit procedure, 2025. 1.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1/21/stability-and-growth-pact-council-adopts-recommendations-to-countries-under-excessive-deficit-procedure/> 검색일자: 2025. 1. 22.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11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12. 6., p.18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8)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9% in the EU,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bp>, 검색일자: 2025. 1. 23;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at 88.2% of GDP in euro area,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ap>, 검색일자: 2025. 1. 23.

- (재정수지) 2024년 3분기 유로지역⁹⁾과 EU 27개국¹⁰⁾의 일반정부 GDP 대비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각각 2.6%, 2.9%로 전분기 대비 0.5%p, 0.4%p 감소함(〈표 1〉 참고)
- (유로지역) 2024년 3분기 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47.0%로 전분기에 비해 약 350억유로 증가한 수입과 명목 GDP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0.5%p 상승
- ▶ 총지출은 전분기 대비 약 180억유로 증가하였고 명목 GDP 상승으로 인해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49.6%를 기록함
- (EU) 2024년 3분기 EU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전분기 대비 각각 420억유로, 270억유로 증가하여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46.4%로 전분기 대비 0.4%p 상승하였고, 총지출은 49.3%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함
- (채무)^{11), 12)} 2024년 3분기 말 유로지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88.2%로 전분기와 동일하고, EU에서도 전분기와 동일한 81.6%를 나타냄(〈표 2〉 참고)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은 2023년 3분기에 비해 88.4%에서 88.2%로 0.2%p 감소한 반면, EU에서는 81.5%에서 81.6%로 0.1%p 증가함
- (국가별) 2024년 3분기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그리스 158.2%, 이탈리아 136.3%, 프랑스 113.8%, 벨기에 105.6%, 스페인 104.3% 순으로 높았고, 에스토니아 24.0%, 불가리아 24.6%, 룩셈부르크 26.6% 순으로 낮음
- ▶ (전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와 비교 시 13개 회원국에서 3분기에 채무 비율이 증가했으며(불가리아 2.4%p, 루마니아 2.0%p 등), 14개국에서는 감소함(포르투갈 -3.2%p, 슬로베니아 -2.6% 등)

표 1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4년 3분기 계절조정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 | 2023년 3분기 | 2024년 2분기(잠정) | 2024년 3분기(잠정) | 전분기 대비(%p) |
|------------|-----------|---------------|---------------|------------|
| | | | | |
| 유로지역(20개국) | | | | |
| 재정수지 | -3.6 | -3.1 | -2.6 | 0.5 |
| 총수입 | 46.0 | 46.5 | 47.0 | 0.5 |
| 총지출 | 49.6 | 49.6 | 49.6 | 0.0 |
| EU | | | | |
| 재정수지 | -3.6 | -3.3 | -2.9 | 0.4 |
| 총수입 | 45.6 | 46.0 | 46.4 | 0.4 |
| 총지출 | 49.1 | 49.2 | 49.3 | 0.1 |

주 1.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9% in the EU,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vw/2-22012025-bp>, 검색일자: 2025. 1. 23.

9) 유로지역은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로 2024년 1월 기준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10) EU 회원국은 유로지역 20개국에서 7개국(덴마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체코, 폴란드, 헝가리)을 더한 27개국으로 구성

11) 일반정부 채무 범위는 분기 말 일반정부 총채무(명목기준)로 ESA 2010(유럽 국가 및 지역 계정 시스템, EU 회계 프레임워크)에 정의된 통화 및 예금(AF.2), 채무증권(AF.3) 및 대출(AF.4)로 구성

12) GDP 대비 채무 비율에서 GDP는 지난 4분기 동안의 분기별 GDP의 합(최근 1년 동안의 GDP)을 사용하며, 분기별 채무 통계는 연간 채무 수치의 발표일이 같은 경우 동일하나, 발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및 연간 데이터 간의 차이가 발생함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3분기와 2024년 3분기를 비교했을 때, 16개 국가에서 채무 비율이 증가하였고(핀

란드 6.7%p, 에스토니아 5.3%p 등), 11개 회원국에서는 감소함(그리스 -10.0%p, 포르투갈 -8.8%p 등)

표 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4년 3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 및 채무

(단위: GDP 대비 %)

| 구분 | 계절조정 재정수지 | | | | 채무 | | | | |
|------------|-----------|---------------|---------------|------------|-----------|---------------|---------------|--------------|------------|
| | 2023년 3분기 | 2024년 2분기(잠정) | 2024년 3분기(잠정) | 전분기 대비(%p) | 2023년 3분기 | 2024년 2분기(잠정) | 2024년 3분기(잠정) | 전년 동기 대비(%p) | 전분기 대비(%p) |
| 유로지역(20개국) | -3.6 | -3.1 | -2.6 | 0.5 | 88.4 | 88.2 | 88.2 | -0.2 | 0.0 |
| EU | -3.6 | -3.3 | -2.9 | 0.4 | 81.5 | 81.6 | 81.6 | 0.2 | 0.1 |
| 벨기에 | -3.7 | -4.9 | -4.3 | 0.6 | 105.3 | 106.6 | 105.6 | 0.4 | -0.9 |
| 불가리아 | -4.4 | -3.5 | -8.7 | -5.2 | 20.9 | 22.1 | 24.6 | 3.6 | 2.4 |
| 체코 | -3.8 | -2.6 | -2.7 | -0.1 | 42.8 | 42.7 | 43.6 | 0.8 | 1.0 |
| 덴마크 | 3.6 | 4.1 | 2.7 | -1.4 | 34.3 | 33.9 | 33.6 | -0.7 | -0.3 |
| 독일 | -2.4 | -2.4 | -2.3 | 0.2 | 63.8 | 61.9 | 62.4 | -1.4 | 0.4 |
| 에스토니아 | -3.4 | -3.1 | -1.7 | 1.4 | 18.7 | 23.8 | 24.0 | 5.3 | 0.2 |
| 아일랜드 | 1.4 | 2.8 | 14.5 | 11.7 | 43.0 | 42.7 | 42.2 | -0.8 | -0.5 |
| 그리스 | -0.7 | 1.5 | 2.2 | 0.7 | 168.1 | 160 | 158.2 | -10 | -1.8 |
| 스페인 | -4.0 | -3.2 | -3.5 | -0.3 | 107.4 | 105.3 | 104.3 | -3.1 | -1.0 |
| 프랑스 | -5.6 | -5.7 | -6.3 | -0.6 | 111.5 | 112.4 | 113.8 | 2.4 | 1.4 |
| 크로아티아 | -0.7 | -3.3 | -2.3 | 1.0 | 63.3 | 60.0 | 59.7 | -3.6 | -0.4 |
| 이탈리아 | : | : | : | : | 135.5 | 136.9 | 136.3 | 0.8 | -0.6 |
| 사이프러스 | 5.3 | 3.1 | 4.9 | 1.9 | 75.1 | 70.5 | 69.7 | -5.4 | -0.8 |
| 라트비아 | -4.5 | -1.3 | -1.6 | -0.3 | 44.2 | 46.4 | 47.7 | 3.5 | 1.3 |
| 리투아니아 | -0.1 | -1.4 | -1.8 | -0.4 | 36.7 | 37.4 | 38.4 | 1.7 | 1.0 |
| 룩셈부르크 | -0.4 | 0.0 | -0.1 | -0.2 | 25.8 | 26.8 | 26.6 | 0.8 | -0.2 |
| 헝가리 | -5.7 | -5.1 | -4.8 | 0.3 | 74.6 | 75.8 | 76.0 | 1.3 | 0.2 |
| 몰타 | -2.5 | -2.4 | -2.1 | 0.3 | 47.1 | 46.4 | 45.3 | -1.8 | -1.1 |
| 네덜란드 | -0.4 | -0.6 | 0.1 | 0.6 | 44.5 | 43.3 | 42.2 | -2.3 | -1.1 |
| 오스트리아 | -3.6 | -4.0 | -5.2 | -1.2 | 78.6 | 82.9 | 83.2 | 4.6 | 0.4 |
| 폴란드 | -6.4 | -8.3 | -6.7 | 1.6 | 48.6 | 52.3 | 53.5 | 4.9 | 1.2 |
| 포르투갈 | 2.4 | 2.5 | 2.2 | -0.3 | 106.3 | 100.7 | 97.5 | -8.8 | -3.2 |
| 루마니아 | -6.3 | -7.3 | -8.6 | -1.4 | 49.5 | 51.1 | 53.1 | 3.6 | 2.0 |
| 슬로베니아 | -2.5 | -1.9 | -2.1 | -0.1 | 71.0 | 69.5 | 66.9 | -4.1 | -2.6 |
| 슬로바키아 | -5.0 | -5.3 | -1.7 | 3.6 | 58.3 | 60.4 | 60.3 | 2.0 | -0.1 |
| 핀란드 | -3.2 | -5.3 | -5.3 | 0.0 | 74.8 | 80.1 | 81.5 | 6.7 | 1.4 |
| 스웨덴 | -0.6 | -1.4 | -2.0 | -0.5 | 30.2 | 31.6 | 31.6 | 1.4 | 0.1 |

주 1. EA(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는 비공개)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2.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2.9% in the EU,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bp>, 검색일자: 2025. 1. 23.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at 88.2% of GDP in euro area, 2025. 1.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12025-ap>, 검색일자: 2025. 1. 23.



IMF

-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Growth: Divergent and Uncertain” 발표(2025. 1. 17.)¹³⁾
- (동향)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의 제조업과 수출 약세, 일본의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부 국가는 예측치보다 부진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한 소비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함
 -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품가격 물가상승률은 안정되었지만 서비스가격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COVID-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선진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시장 및 개도국에서는 주식 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며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금융 여건이 긴축적임
- (경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3.3%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2000~2019년) 평균인 3.7%보다 낮은 수준임
 - 금번(2025년 1월) 전망치는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WEO)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주로 미국의 상향 조정이 다른 주요국의 하향 조정을 상쇄했기 때문
 - (미국)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반영된 강건한 잠재수요와 완화된 통화정책, 양호한 금융 여건에 힘입어 2025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2025년 경제성장률은 1.0%로 2024년의 제조업 약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0.2%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에 금융여건 완화와 신뢰 회복에 힘입어 1.4%로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
 - (기타 선진국) G7 국가와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서는 실질임금 회복이 소비를 지지하는 한편,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제한되어 2025년 2.1%, 2026년 2.3%의 경제성장을 전망
 - (중국) 2024년의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24.11월에 발표된 재정패키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2025년 4.6%, 2026년 4.5%로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인도) 2025년과 2026년에 6.5%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전망) 세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25년 4.2%에서 2026년 3.5%로 하락할 것으로

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5, 2025. 1. 17.,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1/17/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5>, 검색일자: 2025. 1. 20.

- 전망되며, 선진국이 신흥시장 및 개도국보다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에 더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2025년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존과 중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위험) 중기적으로 세계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단기적 위험은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 미국은 상방 위험이 우세한 반면, 대부분의 다른 주요국에서는 높은 정책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조정(특히 유럽의 에너지 및 중국의 부동산 문제)으로 인해 하방 위험이 지배적임
 - 특히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와 미국의 확장적 재정조치(감세 등), 규제 완화 정책 등이 하방 위험요인으로 제시됨
 - 반면 무역협정 체결, 노동 공급 확대, 자원 배분 개선,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의 노력은 중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정책권고)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적 위험을 억제하고, 경제적 완충력을 재건하며, 중기 경제 전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통화정책) 물가상승 압력과 상방 위험이 있는 국가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이 빠르게 냉각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한 국가의 경우 다소 완화된 기조로 전환해야 함
 - (재정정책) 재정건전화 조치는 각 경제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성장 친화적인 접근을 취하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경제 잠재력을 유지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외환시장) IMF의 통합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¹⁴⁾에 따라 외환시장의 심도가 얇고 외화 부채가 상당한 국가의 경우 일시적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이동관리조치,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통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 (구조개혁 등) 노동시장, 경쟁, 보건, 교육, 디지털 분야에서의 표적화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무역 분절화를 막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력 강화가 필수적임

14) IMF의 통합정책체계는 국제 자본 흐름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적 접근법(analytical approach)으로 환율제도만으로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관리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제공함. 이 체계는 정책 수단 간 상호작용, 국가별 특성, 초기 조건, 충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 사용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표 3 2025년 1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단위: %)

| 구분 | 추정 | | 전망 | | 2024년 10월 전망 대비 ¹⁾ | |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5 | 2026 |
| 세계 경제 | 3.3 | 3.2 | 3.3 | 3.3 | 0.1 | 0.0 |
| 선진국 | 1.7 | 1.7 | 1.9 | 1.8 | 0.1 | 0.0 |
| 미국 | 2.9 | 2.8 | 2.7 | 2.1 | 0.5 | 0.1 |
| 유로지역 | 0.4 | 0.8 | 1.0 | 1.4 | -0.2 | -0.1 |
| 독일 | -0.3 | -0.2 | 0.3 | 1.1 | -0.5 | -0.3 |
| 프랑스 | 1.1 | 1.1 | 0.8 | 1.1 | -0.3 | -0.2 |
| 이탈리아 | 0.7 | 0.6 | 0.7 | 0.9 | -0.1 | 0.2 |
| 스페인 | 2.7 | 3.1 | 2.3 | 1.8 | 0.2 | 0.0 |
| 일본 | 1.5 | -0.2 | 1.1 | 0.8 | 0.0 | 0.0 |
| 영국 | 0.3 | 0.9 | 1.6 | 1.5 | 0.1 | 0.0 |
| 캐나다 | 1.5 | 1.3 | 2.0 | 2.0 | -0.4 | 0.0 |
| 그 외 선진국 ²⁾ | 1.9 | 2.0 | 2.1 | 2.3 | -0.1 | 0.0 |
| 한국 | 1.4 | 2.2 | 2.0 | 2.1 | -0.2 | -0.1 |
| 신흥개도국 | 4.4 | 4.2 | 4.2 | 4.3 | 0.0 | 0.1 |
| 아시아 신흥개도국 | 5.7 | 5.2 | 5.1 | 5.1 | 0.1 | 0.2 |
| 중국 | 5.2 | 4.8 | 4.6 | 4.5 | 0.1 | 0.4 |
| 인도 ³⁾ | 8.2 | 6.5 | 6.5 | 6.5 | 0.0 | 0.0 |
| 유럽 신흥개도국 | 3.3 | 3.2 | 2.2 | 2.4 | 0.0 | -0.1 |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 2.4 | 2.4 | 2.5 | 2.7 | 0.0 | 0.0 |
| 중동 및 중앙 아시아 | 2.0 | 2.4 | 3.6 | 3.9 | -0.3 | -0.3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3.6 | 3.8 | 4.2 | 4.2 | 0.0 | -0.2 |
|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⁴⁾ | 0.7 | 3.4 | 3.2 | 3.3 | -0.2 | -0.1 |
| 선진국 | 0.0 | 2.2 | 2.1 | 2.5 | -0.5 | -0.3 |
| 신흥개도국 | 2.0 | 5.4 | 5.0 | 4.6 | 0.3 | 0.2 |
| 원자재 가격(미 달러) | | | | | | |
| 오일 ⁵⁾ | -16.4 | -1.9 | -11.7 | -2.6 | -1.3 | 1.0 |
| 비연료 | -5.7 | 3.4 | 2.5 | -0.1 | 2.7 | -0.9 |
| 세계소비자물가 ⁶⁾ | 6.7 | 5.7 | 4.2 | 3.5 | -0.1 | -0.1 |
| 선진국 ⁷⁾ | 4.6 | 2.6 | 2.1 | 2.0 | 0.1 | 0.0 |
| 신흥개도국 ⁶⁾ | 8.1 | 7.8 | 5.6 | 4.5 | -0.3 | -0.2 |

주 1) 현재 및 2024년 10월 WEO 전망에 대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4년 10월 WEO 전망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3-24회계연도는 2023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을 기준으로 2025년 6.8%, 2026년 6.5%

4)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5)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4. 11. 20. 기준) 기준 배럴당 미국달러 평균 유가는 2025년 \$69.76, 2026년 \$67.96

6) 베네수엘라 제외

7) 물가상승률: 유로존 2024년 2.8%, 2025년 2.1%, 일본 2024년 2.7%, 2025년 2.0%, 미국 2024년 2.2%, 2025년 1.9%

1. 실질실효환율은 2024. 10. 22.~2024. 11. 19.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국가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됨

출처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5. 1., Table 1. p. 8 (한국 수치는 p.10 Annex 참고)



OECD

- ◆ OECD, 2024년 3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4. 1. 16.)¹⁵⁾
 - ▶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의 고용률은 80%를 상회하는 한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로 55.2%로 집계됨
 - ▶ 전분기 대비 고용률은 룩셈부르크(70.3%→69.2%), 칠레(64.9%→64.1%) 순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코스타리카(59.6%→62.3%)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 ▶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약 3/4 국가에서 OECD 평균인 7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비율도 각각 67.1%, 81%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임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3분기에 각각 70.3%, 74.3%로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OECD 38개국 중 13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OECD 2/3 국가(G7 국가 중 이탈리아, 프랑스만 예외)에서 고용률이 OECD 평균인 70.3% 이상으로 집계됨

표 4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19년 | 2023년 | | | | 2024년 | | |
|---------|-------|-------|-------|-------|-------|------|------|------|-------|------|--|
| | | | | Q4 | Q2 | Q3 | Q4 | Q1 | Q2 | Q3 | |
| OECD 전체 | 67.7 | 69.3 | 70.0 | 68.9 | 70.0 | 70.1 | 70.1 | 70.2 | 70.2 | 70.3 | |
| G7 | 71.1 | 72.4 | 73.0 | 72.3 | 73.0 | 73.0 | 73.1 | 73.0 | 73.0 | 73.1 | |
| 유럽연합 | 68.3 | 69.8 | 70.4 | 68.0 | 70.4 | 70.4 | 70.6 | 70.7 | 70.9 | 70.9 | |
| 유로지역 | 67.8 | 69.4 | 70.1 | 68.6 | 70.1 | 70.0 | 70.2 | 70.3 | 70.6 | 70.5 | |
| 호주 | 74.6 | 76.9 | 77.2 | 74.4 | 77.2 | 77.2 | 77.1 | 76.9 | 76.8 | 77.2 | |
| 캐나다 | 73.5 | 75.6 | 75.8 | 74.6 | 76.0 | 75.7 | 75.4 | 75.0 | 74.8 | 74.2 | |
| 프랑스 | 67.3 | 68.1 | 68.5 | 66.5 | 68.5 | 68.4 | 68.4 | 68.7 | 69.0 | 69.2 | |
| 독일 | 75.6 | 76.7 | 77.2 | 75.8 | 77.2 | 77.2 | 77.3 | 77.4 | 77.4 | 77.4 | |
| 이탈리아 | 58.3 | 60.2 | 61.5 | 59.0 | 61.4 | 61.5 | 62.1 | 62.1 | 62.0 | 62.5 | |
| 일본 | 77.9 | 78.5 | 78.9 | 78.1 | 78.9 | 79.0 | 79.2 | 79.1 | 79.3 | 79.5 | |
| 한국 | 66.5 | 68.5 | 69.2 | 67.0 | 69.3 | 69.4 | 69.5 | 69.5 | 69.5 | 69.6 | |
| 스페인 | 62.6 | 64.3 | 65.4 | 63.4 | 65.4 | 65.7 | 65.7 | 65.7 | 66.1 | 66.3 | |
| 영국 | 75.1 | 75.3 | 75.1 | 76.5 | 75.2 | 74.8 | 75.0 | 74.5 | 74.5 | 74.9 | |
| 미국 | 69.4 | 71.3 | 72.0 | 71.7 | 72.0 | 72.0 | 72.0 | 72.0 | 71.9 | 71.8 | |

출처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2025. 1. 16, p. 4, Table 1 일부 발췌.

15)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third quarter of 2024,' 2025. 1. 16.,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1/labour-market-situation-updated-january-2025.html>, 검색일자:2025. 1. 17.

-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24년 11월에 4.9%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4월 이후 5.0%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2024년 11월 실업률은 각각 5.9%, 6.3%로 4개월 연속 최저 수준을 유지

표 5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19년 | 2023년 | | | | 2024년 | | |
|---------|-------|-------|-------|-------|-------|------|------|------|-------|------|--|
| | | | | Q4 | Q2 | Q3 | Q4 | Q1 | Q2 | Q3 | |
| OECD 전체 | 72.2 | 73.1 | 73.7 | 72.9 | 73.7 | 73.7 | 73.8 | 73.9 | 74.0 | 74.0 | |
| G7 | 75.1 | 75.6 | 76.2 | 75.5 | 76.2 | 76.2 | 76.3 | 76.3 | 76.4 | 76.5 | |
| 유럽연합 | 73.6 | 74.5 | 75.0 | 73.0 | 75.0 | 75.0 | 75.2 | 75.4 | 75.4 | 75.4 | |
| 유로지역 | 73.6 | 74.5 | 75.0 | 74.1 | 75.0 | 75.0 | 75.2 | 75.4 | 75.5 | 75.4 | |
| 호주 | 78.7 | 80.0 | 80.2 | 78.3 | 80.2 | 80.2 | 80.3 | 80.0 | 80.1 | 80.6 | |
| 캐나다 | 79.5 | 79.8 | 80.2 | 79.1 | 80.3 | 80.2 | 80.0 | 79.8 | 79.9 | 79.5 | |
| 프랑스 | 73.0 | 73.6 | 73.9 | 72.7 | 74.0 | 73.9 | 74.0 | 74.3 | 74.6 | 74.8 | |
| 독일 | 78.5 | 79.3 | 79.7 | 78.2 | 79.7 | 79.7 | 79.9 | 80.1 | 80.1 | 80.2 | |
| 이탈리아 | 64.5 | 65.6 | 66.7 | 65.4 | 66.6 | 66.7 | 67.1 | 67.0 | 66.7 | 66.6 | |
| 일본 | 80.3 | 80.7 | 81.1 | 80.0 | 81.1 | 81.2 | 81.4 | 81.3 | 81.5 | 81.7 | |
| 한국 | 69.0 | 70.5 | 71.1 | 69.6 | 71.1 | 71.3 | 71.4 | 71.5 | 71.5 | 71.4 | |
| 스페인 | 73.7 | 74.0 | 74.5 | 73.8 | 74.4 | 74.7 | 74.6 | 74.6 | 74.8 | 74.8 | |
| 영국 | 78.4 | 78.1 | 78.3 | 79.4 | 78.6 | 78.1 | 78.0 | 77.9 | 77.8 | 78.3 | |
| 미국 | 73.4 | 74.0 | 74.7 | 74.4 | 74.6 | 74.8 | 74.9 | 74.9 | 74.9 | 75.0 | |

출처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2025. 1. 16, p. 5, Table 2 일부 발췌.

표 6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3년 | 2024년 | | | 2024년 | | |
|---------|-------|-------|-------|-------|------|------|-------|------|------|
| | | | Q4 | Q1 | Q2 | Q3 | 9월 | 10월 | 11월 |
| OECD 전체 | 5.0 | 4.8 | 4.9 | 4.9 | 4.9 | 4.9 | 4.9 | 4.9 | 4.9 |
| G7 | 4.1 | 4.1 | 4.1 | 4.2 | 4.3 | 4.3 | 4.3 | 4.3 | 4.3 |
| 유럽연합 | 6.2 | 6.0 | 6.1 | 6.1 | 6.0 | 5.9 | 5.9 | 5.9 | 5.9 |
| 유로지역 | 6.8 | 6.6 | 6.5 | 6.5 | 6.5 | 6.3 | 6.3 | 6.3 | 6.3 |
| 호주 | 3.7 | 3.7 | 3.9 | 3.9 | 4.1 | 4.1 | 4.1 | 4.1 | 3.9 |
| 캐나다 | 5.3 | 5.4 | 5.8 | 5.9 | 6.2 | 6.5 | 6.5 | 6.5 | 6.8 |
| 프랑스 | 7.3 | 7.3 | 7.5 | 7.5 | 7.5 | 7.5 | 7.5 | 7.6 | 7.7 |
| 독일 | 3.1 | 3.0 | 3.1 | 3.3 | 3.5 | 3.4 | 3.4 | 3.4 | 3.4 |
| 이탈리아 | 8.1 | 7.7 | 7.5 | 7.1 | 6.7 | 6.1 | 6.0 | 5.8 | 5.7 |
| 일본 | 2.6 | 2.6 | 2.5 | 2.5 | 2.6 | 2.5 | 2.4 | 2.5 | 2.5 |
| 한국 | 2.9 | 2.7 | 2.8 | 2.8 | 2.8 | 2.5 | 2.5 | 2.7 | 2.7 |
| 스페인 | 13.0 | 12.2 | 11.9 | 11.8 | 11.6 | 11.3 | 11.2 | 11.2 | 11.2 |
| 영국 | 3.8 | 4.1 | 3.9 | 4.3 | 4.2 | 4.3 | 4.3 | .. | .. |
| 미국 | 3.7 | 3.6 | 3.8 | 3.8 | 4.0 | 4.2 | 4.1 | 4.1 | 4.2 |

주 1. ..는 데이터 없음

출처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2025. 1. 16, p. 7, Table 4 일부 발췌.



미국

예산·결산 등

- ◆ 미국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2024회계연도¹⁶⁾ 발생주의 결산보고서¹⁷⁾ 발표 (2025. 1. 16.)¹⁸⁾
- (발생주의 기준 연방 비용)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총비용(gross cost; 총원가 개념)은 7조 7,722억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
 - 2024회계연도 순 운영비용¹⁹⁾(net operating cost; 순 운영 원가 개념)은 전년 대비 29.0% (9,922억달러) 감소한 2조 4,250억달러
- (현금주의 기준 재정수지와 비교)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현금주의)는 1조 8,328억달러로 순 운영비용(발생주의)과 재정적자(현금주의) 차이는 2024회계연도 기준 약 5,922억달러에 이룸
 -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8.1%(1,376억달러) 증가한 1조 8,328억달러
 - 재정적자와 순 운영비용의 차이는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혜택 프로그램 같은 순 운영비용에 포함되지만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²⁰⁾ 규모에서 주로 기인

- (자산)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소유 자산(2024.9.30. 기준)은 전년 대비 4.5%(2,430억달러) 증가한 5조 6,621억달러
 - 자산은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 약 1.78조달러, 연방 학자금 직접 대출²¹⁾(FDSL)²²⁾이 59.5% 비중을 차지하는 순 대출채권 약 1.75조달러, 순 유형자산 약 1.3조달러, 순 재고자산 및 관련 자산 4,473억달러 등으로 구성
- (부채) 2024회계연도 부채는 전년 대비 5.2%(2조 6,470억달러) 증가한 45조 5,459억달러
 - 부채는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²³⁾ 및 미지급 이자를 합한 약 28.3조달러,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등 약 15.0조달러, 기타 약 2.2조달러로 구성¹⁾

16) 2023년 10월 ~ 2024년 9월

17) FY2024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8) 미 재무부, "FY2024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5. 1. 16., [https://fiscal.treasury.gov/files/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2024/01-16-2025-FR-\(Final\).pdf](https://fiscal.treasury.gov/files/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2024/01-16-2025-FR-(Final).pdf), 검색일자: 2025. 1. 21.

19) 순 운영비용은 순 비용에서 정부 세금 및 기타 수입(other unearned revenues) 등을 차감한 수치

20) 연방 비용 추계가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발생했지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 성격의 비용

21) 연방 학자금 직접 대출 외에도 연방 가족 교육 대출채권(FFEL,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도 순 대출채권을 구성하고 있음

22) FDSL: Federal Direct Student Loans

23)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치

기타

-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35 예산·경제전망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보고서²⁴⁾ 발표(2025. 1. 17.)^{25), 26), 27)}
- (경제성장) 2025년²⁸⁾ 실질성장률은 정부 및 소비자 지출의 증가세 감소에 기인하여 2024년 2.3%에서 0.4%p 하락한 1.9%로 둔화(moderate) 전망
- (정책 금리) 2025년 4분기에 3.7% → 2026년 4분기에 3.5%로 하락 전망

- (주거용 투자; residential investment) 주택 건설, 개조, 중개인 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주거용 투자의 경우, 2024년 2.5% 증가율에 이어 2025~2026년에 각각 6.3%, 6.6%의 증가세가 확대되나, 이후 증가세 둔화 전망
- (실업률) 경제성장 둔화(slowdown)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2024년 4분기 4.1% → 2025년 4분기에 4.3%로 증가하며, 2026년에도 4.4%로 소폭 상승
- (임금; wages) 노동 수요 감소와 함께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명목 임금 증가 속도 둔화 전망

표 7 미국 경제 전망

(단위: %)

| 전망치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30~2035) |
|------------------------------|-------|-------|-------|-------|-------------|
| | 실적 | 전망 | | | |
| 실질 GDP 상승률 ¹⁾ | 2.3 | 1.9 | 1.8 | 1.8 | 1.8 |
| 인플레이션(CPI) ^{1), 2)} | 2.7 | 2.3 | 2.4 | 2.3 | 2.2 |
| 실업률 ³⁾ | 4.0 | 4.3 | 4.4 | 4.4 | 4.4 |

주 1) 직전년도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change from 4th quarter to 4th quarter)

2) Urban

3) 연평균

출처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 1. 17. Table C-1, p. 27

- (재정수지) 2025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실적 대비 1.8% 증가한 1조 8,650억달러(GDP 대비 6.2%) 적자 추정
- 재정적자는 2035회계연도에 2.7조달러*로 증가하면서 GDP 대비 6.1%로 지난 50년(1975~2024)의 평균치인 3.8%를 초과할 전망
- (연방채무) 2025회계연도 말 기준, GDP 대비 연방채무는 전년 실적치(97.8%) 대비 2.1%p 증가한 99.9%로 추정되며, 2035회계연도에는 역대 최고점인 GDP의 106.1%²⁹⁾를 넘어 118.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수입) 2025회계연도 연방수입은 전년 실적치 대

24) 동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예산안 발표 시점인 2월 전인 매해 1월경에 발표

25) 미국 의회예산처(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5," 2025. 1. 17., <https://www.cbo.gov/publication/60870>. 검색일자: 2025. 1. 20.

26) 동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5년 1월 6일까지 입법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 경제 전망은 2024년 12월 4일까지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작성

27) 모든 연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를 의미

28) 직전년도 4분기 대비 증가율(Change from fourth quarter to fourth quarter)

29) 연방 채무는 1945회계연도에 103.9%를 기록한 후, 1946회계연도에 역대 최고 수치인 106.1%를 기록

- 비 5.0%(2,450억달러) 증가한 5조 1,630억달러 (GDP대비 17.1%)로 전망되며, 이후 향후 3년 동안 GDP 대비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장기적으로는 18.1%에서 안착 전망
- GDP 대비 세입은 향후 3년 동안 증가하며, 이는 대다수 계획되어 있는 세제 변화(2025년 말 세금 감면 제도³⁰⁾ 만료)에 의한 GDP 대비 개인소득세 수입의 증가에 기인

- (지출) 2025회계연도 연방지출은 전년 실적치 대비 4.1%(2,780억달러) 증가한 7조 280억달러 (GDP 대비 23.3%) 전망(장기적으로는 23.9% 전망)
- 사회보장 지출 및 메디케어 등의 의무지출의 증가로 인한 의무지출이 GDP 대비 확대되고, 재량지출은 규모는 지속 증가하나 GDP 대비 수치는 감소세 전망

표 8 미국 예산 전망 (단위: 십억달러)

| 재정전망 | 실적 | | | | | | 전망 | | | | |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2035년 |
| 예산총량 (십억달러) | | | | | | | | | | | |
| 수입 | 3,462 | 3,421 | 4,047 | 4,896 | 4,439 | 4,918 | 5,163 | 5,580 | 5,935 | ... | 8,031 |
| 지출 | 4,447 | 6,550 | 6,822 | 6,272 | 6,135 | 6,750 | 7,028 | 7,294 | 7,622 | ... | 10,563 |
| 재정적자 | 984 | 3,129 | 2,775 | 1,375 | 1,695 | 1,832 | 1,865 | 1,713 | 1,687 | ... | 2,531 |
| 연방 채무 ¹⁾ | 16,803 | 21,017 | 22,284 | 24,257 | 26,240 | 28,199 | 30,103 | 31,883 | 33,636 | ... | 52,056 |
| 예산총량 (GDP대비 %) | | | | | | | | | | | |
| 수입 | 16.3 | 16.3 | 18.1 | 19.6 | 16.5 | 17.1 | 17.1 | 17.8 | 18.2 | ... | 18.3 |
| 지출 | 21.0 | 31.2 | 30.5 | 25.1 | 22.7 | 23.4 | 23.3 | 23.3 | 23.4 | ... | 24.0 |
| 재정적자 | 4.6 | 14.9 | 12.4 | 5.5 | 6.3 | 6.4 | 6.2 | 5.5 | 5.2 | ... | 5.8 |
| 연방 채무 ¹⁾ | 79.2 | 100.1 | 99.6 | 97.0 | 97.3 | 97.8 | 99.9 | 101.7 | 103.4 | ... | 118.5 |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Table B-1, 각 년도.

-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³¹⁾ 이행 후 공식 임기 시작과 함께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2025. 1. 20)³²⁾
- (배경)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수정 헌법³³⁾ 제20조에 근거하여,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 당

- 일 정부부터 미합중국 대통령의 신분으로 공식 임기* 시작
- (취임식 연설 주요 언급 정책) 과도한 대규모 지출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대응 (석유 시추), 정부 효율위원회(DOGE) 설치, 그린

30) Tax Cuts and Jobs Act(P.L. 115-97)
 31) 백악관, "The Inaugural Addres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remarks/2025/01/the-inaugural-address/>, 검색일자: 2025. 1. 22.
 32) 백악관, "Presidential Action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age/5/>, 2025. 1. 22.
 33) 미국 수정 헌법 제20조(20th Amendment, Section 1)
 34) The Guardian, "Trump revokes Biden order that had set 50% electric vehicles target for 2030," 2025. 1. 21.,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20/trump-executive-order-electric-vehicles>, 검색일자: 2025.1.24.

뉴딜 정책 종식(전기차 의무화 비율 철회³⁴), 자동차 산업 보호), 국내 세수를 담당하는 국세청(IRS)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해외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담당할 ERS(External Revenue Services) 출범 계획 등

- (주요 행정명령) 정부 효율위원회(DOGE) 출범, 국경 안전 확보, WHO 및 파리협정 탈퇴 등
 - (정부 효율위원회(DOGE*) 출범)³⁵ 연방 기술 및 소프트웨어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주요 업무로 규정
 - *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 본 조직은 연방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실 직속(USDS)³⁶ 소관의 임시 조직으로 하며,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 의제 추진 후 종료
- (국경 안전 확보)³⁷ 불법 이민자 체포 후 구금하지 않고 석방(catch and release)한 관행을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정책 지침 제안 제시
- (WHO 탈퇴)³⁸ 미국 정부의 자금 및 자원 지원 등 중단, WHO를 대신할 국제 협력 파트너 파악
- (파리협정 탈퇴)³⁹ 미국 유엔 대사의 유엔 사무총장(파리협정의 수탁자)에게 미국이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의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공식적인 서면 통보 제출 제시

- (주요 메모랜드) 글로벌 세계 협정 취소, 긴급 물가 대응, 미국 우선주의 무역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OECD 글로벌 조세 협정 취소)⁴⁰ 의회의 관련 조항 채택이 없는 한 OECD 회원국들의 글로벌 조세 협정(Global Tax Deal)이 미국 내에서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을 것임을 명시
 - (미국 우선주의 무역)⁴¹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 해결(관련 사항 보고 시한은 2025년 4월 1일 또는 4월 30일까지)
 - ▶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상무부·국토안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ERS(External Revenue Service)에 대한 설계 및 구축. 이를 통해 관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 조사 및 권고
 - ▶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검토 및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
 - ▶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정 검토, 중국의 부당(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인 (discriminatory) 정책 조사 후 대응 조치 권고 등

35) 백악관,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stablishing-and-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 검색일자: 2025. 1. 23.

36) USDS: United States DOGE Services → 기존 조직인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s를 개명

37) 백악관, "SECURING OUR BORDERS - Executive Ord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ecuring-our-borders/>, 검색일자: 2025. 1. 23.

38) 백악관,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Executive Ord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the-worldhealth-organization/>, 검색일자: 2025. 1. 23.

39) 백악관,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 Executive Order,"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utting-america-first-in-international-environmental-agreements/>, 검색일자: 2025. 1. 23.

40) 백악관,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Deal (Global Tax Deal), Executive Order," 2025.1.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the-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oecd-global-tax-deal-global-tax-deal/>, 검색일자: 2025. 1. 22.

41) 백악관, "America First Trade Policy,"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자: 2025. 1. 22.

- (비상사태 선포) 남부 국경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⁴²⁾함으로써 남부 국경 지역 군대 배치 및 물리적인 장벽(physical wall) 건설 조치 제시
-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 철회*”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

으며, 이 행정명령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서명된 78개의 행정명령(66개)과 메모랜덤 (12개)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문 표현: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일본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25. 1. 17.)⁴³⁾

※ (목적) 본 전망은 향후 10년간 경제·재정 전망을 제시하며,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 상황 평가, 중장기적인 경제·재정 정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전망은 1년에 2회(1월, 7월) 발표되고 있음.

- (시나리오별 가정) 본 전망은 2025년도까지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의 실적치와 정부 경제전망 등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202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의 전망을 제시
- (경제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2026~2027년도 0.6%, 2034년도에는 0.4%로 중장기적으로 0%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며, 명목 GDP 성장률은 2026년도 1.4%,

2027년도 0.9%, 2034년도에는 0.7%를 나타낼 전망

-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는 임금 인상 및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가 실현되어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도 1.2%, 2027년도 1.5%, 2034년도에는 1.4%를 나타낼 것이며, 명목 GDP 성장률은 2026년도 2.7%, 2027년도 2.9%, 2034년도에는 2.8%를 나타낼 전망
- 고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도 1.3%, 2027년도 1.6%, 2034년도에는 1.8%를 나타낼 것이며, 명목 GDP 성장률은 2026년도 2.7%, 2027년도 3.1%, 2034년도에는 3.2%를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⁴⁴⁾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42) 백악관,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claring-a-national-emergency-at-the-southern-border-of-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1. 22.

43)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5. 1. 17.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r7chuuchouki2.pdf> 검색일자: 2025. 1. 21.

44) 재정전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관점에서 기준선 시나리오와 성장이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기술함. 재정 전반적으로는 2025년도 예산 등을 반영함. 세출에 대해서는 다년도 계획에 의해 구체적인 규모가 예상되는 방위력 강화, 국도강인화 계획을 포함하며, 사회보장지출은 고려화 요인 및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가하고, 그 외 일반세출은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함. 세수 등은 거시 경제와 같은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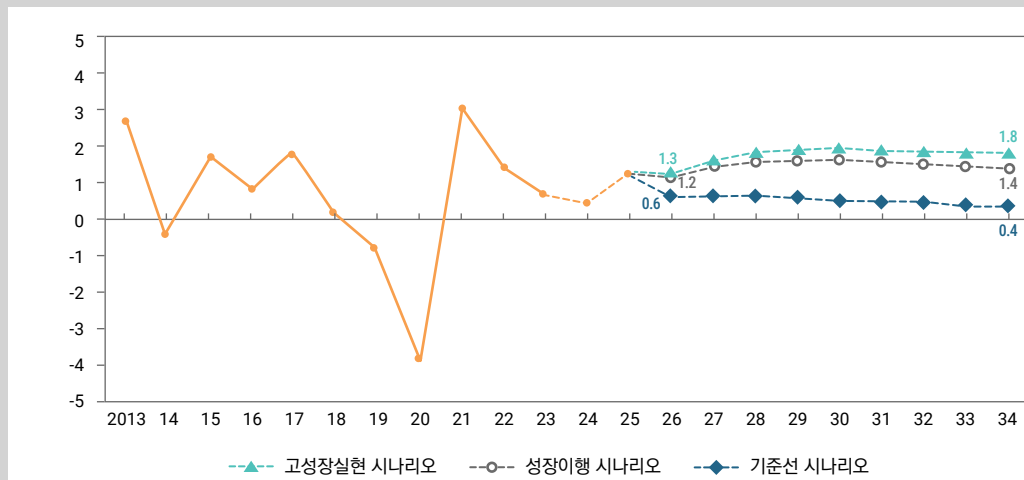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1%로 흑자로 전환된 후 점차 흑자폭이 축소하여 2034년도에는 -0.2%로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2029년도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3%로 흑자로 전환된 후 점차 흑자폭이 확대되어 2034년도에는 1.8%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 작년 7월 전망에서는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현재 재정건전화 목표⁴⁵⁾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 작년 7월 전망⁴⁶⁾에서는 202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가 0.1%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임금·소득 증가 및 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출이 증가하여 202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0.7%로 전망

그림 1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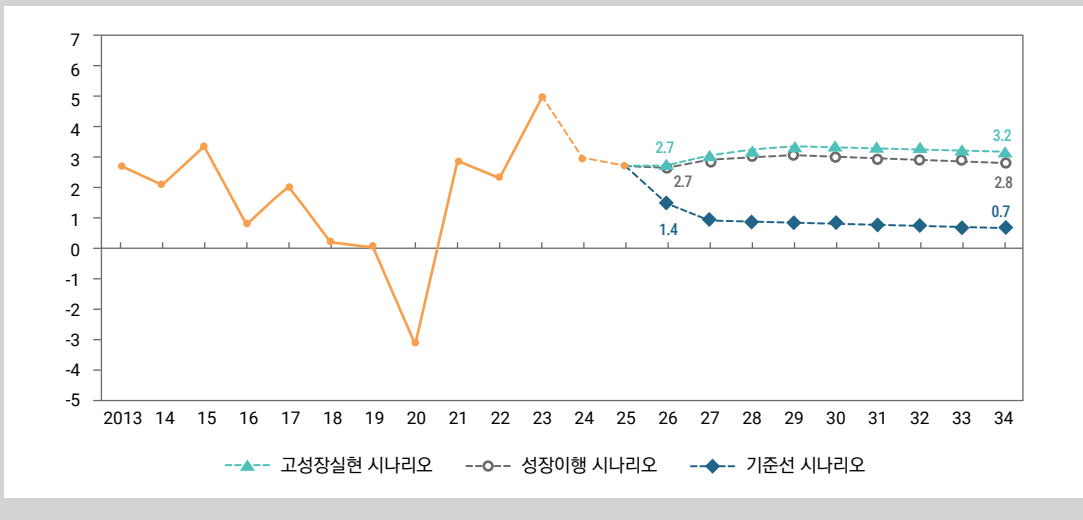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5. 1. 17., p. 4, 그림2

45) 2024년 6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에서는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현재 재정건전화 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언급. 출처: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4 について」, 2024. 6. 21.;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4/2024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5. 1. 23.

46)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r7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5. 1. 23.

그림 2 일본의 중장기 명목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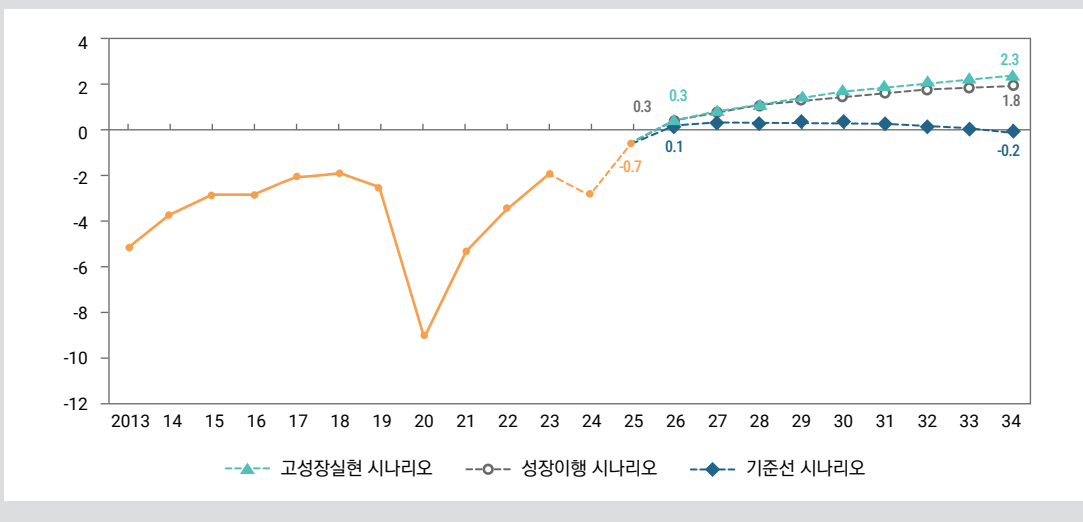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5. 1. 17., p. 4, 그림3

그림 3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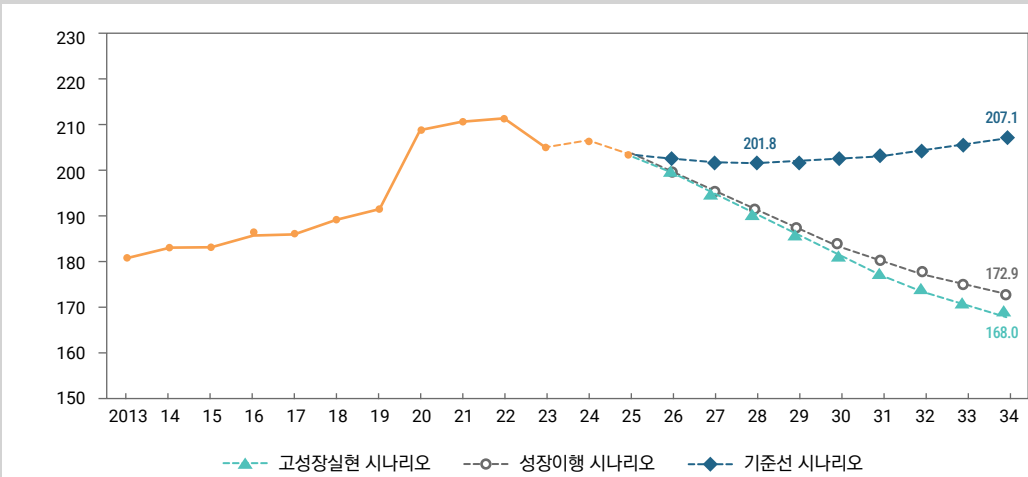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5. 1. 17., p. 9, 그림8

그림 4 일본의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 채무잔고 전망(GDP 대비)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7年1月17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5. 1. 17., p. 10, 그림9



독일

예산·결산 등

- ◆ 독일 연방 재무부, FY2024 잠정결산 발표(2025. 1. 20.)⁴⁷⁾
- (수입) 신규차입과 예비비를 제외한 연방정부 수입은 목표 대비 138억유로 높은 4,414억유로를 기록
- FY2024 조세수입은 목표 대비 26억유로 적은 3,750억유로를 기록하였으나, 세외수입(행정수입과 화폐주조세입)의 증가로 상쇄
- (지출) FY2024의 총지출은 목표 대비 21억유로 낮은 4,748억유로를 기록

- (신규차입) FY2024의 신규차입은 계획보다 57억 유로 감소한 333억유로를 기록하였으며, FY2023년(272억유로) 대비 약 62억유로 증가
- (자본지출) FY2024의 자본지출(투자)은 567억유로로 목표치인 705억유로보다 139억유로 낮은 수준
- 전년 대비 FY2024 자본지출은 3.1%(17억유로) 증가
- (평가) FY2024 결산은 예상보다 낮은 차입과 예비비 보존으로 안정적 재정관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
- 2025~2026년 사이에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발

47)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Jahresabschluss des Bundeshaushalts 2024," 2025. 1.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5/01/2025-01-20-vorlaeufiger-jahresabschluss-bhh-2024.html>, 검색일자: 2025. 1. 21.

표 9 독일의 FY2024 잠정 결산

(단위: 십억유로)

| 구분 | 2023 | 2024(목표) (A) | 2024(잠정결산) (B) | 차이(B)-(A) |
|--------|-------|--------------|----------------|-----------|
| 총지출 | 4,577 | 4,768 | 4,748 | -21 |
| 총수입 | 4,577 | 4,768 | 4,748 | -21 |
| 조세수입 | 3,561 | 3,776 | 3,750 | -26 |
| 세외수입 | 369 | 500 | 664 | 164 |
| 신규차입 | 272 | 390 | 333 | -57 |
| 비교: 투자 | 550 | 705 | 567 | -139 |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Vorläufiger Jahresabschluss des Bundeshaushalts 2024," 2025. 1. 20.

전과 이에 따른 세수감소 및 추가지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전망

- FY2028부터는 NATO의 GDP 대비 2% 국방예산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재정여력이 필요

기타

- ◆ 독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정부, 2025년 변경되는 경제·조세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2024. 12. 27., 2025. 1. 6.)^{48), 49)}
- 연방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변경되는 주요 경제 및 조세정책의 내용을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법정 최저임금은 2024년 12.41유로에서 2025년 12.82유로로 41센트 인상
 - (기본공제 인상) 개인소득 기본공제를 2024년 11,784유로에서 2025년에는 12,096유로로 인상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보장
 - (연대세⁵⁰⁾ 부과기준 금액 인상) 2025년 연대세 부

과 기준 금액은 기존 36,260유로에서 39,900유로로 상향 조정되며, 2026년에는 40,700유로로 추가 조정

- (아동보육비 소득공제 및 아동수당 확대) 2025년부터 아동보육비 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4,000유로에서 4,800유로로 확대되며, 아동수당은 월 250유로에서 255유로로 인상
-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 상속 시 공제금액 기준을 10,300유로에서 15,000유로로 상향 조정
- (개정된 재산세 적용) 2025년부터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을 따르게 되며, 연방정부 모델 또는 독자적 모델에 따라 산정
 - ▶ 새로운 재산세는 2022년 1월 1일자로 평가된 재산가치와 토지 면적,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미개발 부지에 대한 추가 세율(Grundsteuer C)이 도입
- (농업·임업 소득세 경감조치 연장)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 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의 소득세 경감 조

48) 독일 연방 재무부, "Die wichtigsten steuerlichen Änderungen 2025," 2024. 12.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das-aendert-sich-2025.html>, 검색일자: 2025. 1. 6.

49) 독일 연방 정부, "Was ändert sich im Januar 2025?," 2025. 1. 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gesetzliche-neuregleungen-januar-2025-2324594>, 검색일자: 2025. 1. 9.

50)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는 독일의 동서독 통일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2021년부터 일부 계층에 대해서 조세부담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고소득자에게는 부과되고 있음

치를 2028년까지 연장

- ▶ 독일 정부는 농업 및 임업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EStG) 제32c조에 따라 농업 및 임업 소득을 3년간의 평균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소득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 (담배세 인상) 2025년 기준 담배 1개비당 11.15센트에서 11.71센트, 물담배 kg당 19유로에서 21유로, 전자담배 ml당 0.20유로에서 0.26유로로 인상
- (천연가스 에너지세 인상) 기존에 18.38유로/MWh였던 천연가스 에너지세를 22.85유로/MWh로 인상하나, 대중교통용 천연가스는 세금 감면 확대
- (미술품 거래세율 인하) 독일의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술 작품의 전달 및 공동체 내 취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19%에서 7%로 인하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1~3분기 공공재정 적자 발표(2025. 1. 10.)⁵¹⁾

- (GDP) 독일의 2024년 1~3분기 지출은 2023년 동 분기보다 5.9% 증가한 1조 5,133억유로, 수입은 5.1% 증가한 1조 4,058억유로로 1,075억유로 재정적자를 기록
- 2024년 1~3분기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억유로 증가한 1,075억유로였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 공공예산 전 부문

에서 적자를 기록

- ▶ 연방정부 : 지출 4,429억유로, 수입 3,846억유로, 재정적자 582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177억유로 감소)
- ▶ 주정부 : 지출 3,976억유로, 수입 4,049억유로, 재정흑자 73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31억유로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추가예산으로 인해 적자 발생
- ▶ 지방자치단체 : 지출 2,866억유로, 수입 2,606억유로, 재정적자 259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145억유로 증가)
- ▶ 사회보험 : 지출 6,491억유로, 수입 6,330억유로, 재정적자 161억유로(전년 동기 대비 89억유로 증가)
- 2024년 1~3분기 세입은 약 1조 2,004억유로이며, 사회보장기여금 및 원천징수세가 증가
- ▶ 연방정부의 Deutsche Post AG(독일우정 주식회사) 등의 투자 매각으로 인한 수입 증가 47억유로, Deutsche Bahn AG(독일철도 주식회사)의 자기자본 증가로 인한 투자 인수 비용 35억유로 증가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경제성장률 발표(2025. 1. 15.)⁵²⁾

- (GDP) 독일의 2024년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하였으며, 독일의 경제적·구조적 부담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
- 수출 산업에 대한 경쟁 증가,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이자율 수준,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이 경제적,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
- (총부가가치) 2024년 가격조정 거시경제 총 부가가치는 0.4% 감소하였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

51)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bis 3. Quartal 2024 auf 108 Milliarden Euro," 2025. 1. 1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1/PD25_012_711.html, 검색일자: 2025. 1. 14.

52)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4 um 0,2 % gesunken," 2025. 1. 1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1/PD25_019_811.html, 검색일자: 2025. 1. 16.

표 12 2021~2024년 1~3분기 독일 공공예산 주요 수치(가격조정)

(단위: 십억유로)

| 구분 | 일반정부 | 연방정부 | | | |
|----------|---------|--------|-------|--------|-------|
| | |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험 |
| 지출(가격조정) | | | | | |
| 2024년 | 1,513.3 | 442.9 | 404.9 | 286.6 | 649.1 |
| 2023년 | 1,429.3 | 450.5 | 379.5 | 259.2 | 607.7 |
| 2022년 | 1,326.9 | 403.5 | 371.4 | 231.3 | 598.7 |
| 2021년 | 1,306.6 | 408.0 | 365.5 | 216.3 | 587.7 |
| 수입(가격조정) | | | | | |
| 2024년 | 1,405.8 | 384.6 | 397.6 | 260.6 | 633.0 |
| 2023년 | 1,337.9 | 374.6 | 382.6 | 247.8 | 600.5 |
| 2022년 | 1,261.2 | 324.0 | 393.9 | 230.4 | 590.9 |
| 2021년 | 1,156.4 | 296.4 | 362.3 | 210.3 | 558.3 |
| 재정수지 | | | | | |
| 2024년 | -107.5 | -58.2 | -7.3 | -25.9 | -16.1 |
| 2023년 | -91.4 | -75.9 | 3.1 | -11.4 | -7.2 |
| 2022년 | -65.7 | -79.4 | 22.4 | -0.8 | -7.8 |
| 2021년 | -150.2 | -111.6 | -3.3 | -6.0 | -29.4 |

- 주 1. 2024년은 잠정치
 2.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지출 및 수입은 각 정부 수준의 거래액이 중복된 수치(예, 연방정부 → 주정부 지출,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분배)
 3. 재정통계 범위내에서의 공공예산과 국민회계 상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bis 3. Quartal 2024 auf 108 Milliarden Euro," 2025. 1. 14.

진하나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증가

- ▶ 제조업 부문은 기계 및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총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건설업 부문은 높은 가격과 이자율로 인해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8% 감소
- ▶ 서비스업 부문은 전반적으로 생산량 0.8% 증가하였지만, 무역, 운송, 숙박업의 총부가가치는 정체된 반면, 정보통신(+2.5%), 공공행정·교육·의료분야(+1.6%)는 성장세를 보임
- (총고정자본형성) 2024년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기계·장차·차량을 포함한 장비투자가 건설투자보다 2024년 더 급격히 감소
- (소비지출) 가계 및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0.3%, 2.6% 증가

- ▶ 국가가 현물로 지급하는 사회적 혜택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 지출과 사회법 개정으로 인한 청소년 지원과 통합지원이 증가
- (노동시장)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4,61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고용 증가는 정체된 것으로 평가
- (일반정부 재정)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55억유로 증가한 1,130억유로이며,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금전적 사회혜택에 대한 지출 증가에 기인
- 연방정부의 에너지 위기 완화 조치가 완료되었으나, 연금, 돌봄수당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증가

표 13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가계 최종소비지출 | 2.3 | 5.6 | -0.4 | 0.3 |
| 정부 최종소비지출 | 3.4 | 0.1 | -0.1 | 2.6 |
| 총고정자본형성 | 0.6 | -0.2 | -1.2 | -2.8 |
| 건설 | -3.1 | -3.9 | -3.4 | -3.5 |
| 기계장비 | 3.5 | 4.5 | -0.8 | -5.5 |
| 기타 | 7.0 | 2.6 | 4.7 | 3.9 |
| 수출 | 10.0 | 3.1 | -0.3 | -0.8 |
| 수입 | 9.0 | 7.0 | -0.6 | 0.2 |
| 총부가가치 | 3.8 | 1.7 | 0.3 | -0.4 |
| 제조업 | 8.7 | 0.6 | 0.9 | -3.0 |
| 건설 | -3.6 | -11.3 | -0.4 | -3.8 |
| 도소매·교통·숙박·음식업 | 1.4 | 5.4 | -1.4 | 0.0 |
| 정보·통신 | 8.6 | 0.5 | 3.7 | 2.5 |
| 사업서비스 | 9.1 | 3.3 | 0.5 | 0.0 |
| 공공서비스·교육·보건 | 1.4 | 4.5 | 1.5 | 1.6 |
| 기타 서비스 | 1.0 | 16.9 | 2.0 | 0.9 |
| GDP | 3.7 | 1.4 | -0.3 | -0.2 |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4 um 0,2 % gesunken," 2025. 1. 15.

표 14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백만유로,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일반정부 재정수지 규모 | -116,436 | -84,875 | -107,522 | -113,041 |
| GDP 대비 비율 | -3.2 | -2.1 | -2.6 | -2.6 |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im Jahr 2024 um 0,2 % gesunken," 2025. 1. 15.



프랑스

◆ 프랑스 감사원, 예외적 지원(aide exceptionnelles)

에 대한 지출 검토 보고서 발표(2025. 1. 9.)⁵³⁾

* 해당 보고서는 2024년 3월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이 감사원에 의뢰한 3가지 주제⁵⁴⁾의 지출 검토 중 2번째 보고서에 해당하며, 2024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

었으나 총리 불신임권 등 정치적 혼란 등을 사유로 발표 일정 이 연기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프랑스 정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적 지원 중 2024년까지 시

53) 프랑스 감사원(Cour des Comptes), "Les mesures d'aide exceptionnelles : une sortie de crise à achever pour le budget de l'État," 2024. 1. 9., <https://www.comptes.fr/fr/publications/les-mesures-daide-exceptionnelles-une-sortie-de-crise-achever-pour-le-budget-de-letat>, 검색일자: 2025. 1. 20.

54) 3가지 주제는 ①위기 조치 및 예외적 지원 철회, ②지방정부의 공공재정 건전성, ③건강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

- 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관련 지출 절감 방안 12개를 제시
- 코로나19 팬데믹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지원은 위기 안정 이후에도 일부만 철회되어 재정 부담을 가중
 - ※ 예외적 지원의 경우 2024년 재정 적자에 경기 부양책 43억 유로 및 에너지 관련 지원 52억유로의 영향을 미침
 - 5가지 정책 영역에서 12개의 지출 절감 방안을 발굴하였으며, 해당 방안 수용 시 2025년 예산의 경우 약 15억유로의 예산 지출 삭감, 약 12억유로의 조세 지출 절감, 약 7억유로의 지출 예방(약정 미승인 등) 달성 가능

- (직업 훈련) ①견습 채용 대상 선정 시 학위 및 기업 규모 기준 강화, ②고등 교육 지원금 수준을 학위 취득의 평균 소요 비용으로 제한, ③직업 훈련 기여금(Cufpa)⁵⁵⁾ 납부 면제 또는 감면을 폐지 ④FNE-Formation⁵⁶⁾ 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팬데믹 이전으로 복원, ⑤청년 참여 계약(CEJ)⁵⁷⁾ 제도 축소
- (가계 구매력 제고 세제 혜택) ⑥주행거리 실비 공제율⁵⁸⁾ 인하, ⑦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하
- (농업 및 임업의 친환경 전환) ⑧농업 관련 예산을 2023~2027년 중기재정법안⁵⁹⁾ 수준으로 복원
- (친환경 차량 지원) ⑨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무게 상한의 하향 조정, ⑩건설 및 공공 부문의 경우

표 15 예외적 지원 지출 검토 방안

(단위: 백만유로)

| 유형 | 절감 방안 | 감축 규모 | |
|----------|------------------------|-------|-------|
| | | 2025년 | 2027년 |
| 예산 지출 삭감 | 견습 대상 기준 강화 | 745 | 2,857 |
| | 고등 교육 지원금 수준 하향 | 255 | 255 |
| | FNE-Formation 지원 규모 축소 | 86 | 86 |
| | 청년 참여 계약(CEJ) 제도 축소 | 255 | 454 |
| | 전기차 보조금 대상(무게 기준) 축소 | 200 | 200 |
| 조세 지출 절감 | 직업 훈련 기여금 감면 혜택 폐지 | 373 | 373 |
| | 주행거리 기반 실비 공제율 인하 | 530 | 400 |
| | 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하 | 200 | 200 |
| | 건설 및 공공 부문 경유 세금 감면 종료 | 60 | 179 |
| 지출 예방 | 농업 관련 예산 축소 | 537 | |
| | ICC/Tech&Touch 펀드 중단 | 90 | |
| | 문화 및 디지털 유산 투자 프로젝트 중단 | 104 | |

출처: 감사원, "LES MESURES D'AIDE EXCEPTIONNELLES : UNE SORTIE DE CRISE À ACHEVER POUR LE BUDGET DE L'ÉTAT-Récapitulatif des propositions d'économies," 2025. 1.

55) 직업 훈련 자금 지원을 위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공평한 경쟁의 보장 및 직업 훈련생 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함

56) 산업 및 기술 급변 등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직원 재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57)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교육, 공공일자리를 등을 제공하여 소득 보장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

58) 프랑스 행정 정보 제공 포털, "Frais professionnels : les barèmes kilométriques 2024 restent identiques à ceux de l'an dernier," 2024. 4. 9.,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686>, 검색일자: 2025. 1. 21.

59)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2023-2027

세금 감면 종료

- (문화 관련 산업 지원) ①ICC/Tech&Touch 펀드⁶⁰⁾ 신규 약정 금지 및 추가 예산 조달 금지
- ②문화 및 디지털 유산 투자 프로젝트⁶¹⁾ 관련 예산 취하 및 중단

◆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신임 총리, 주요 개혁 및 정책 방향 발표(2025. 1. 14.)⁶²⁾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12월 13일 프랑수아 바이루를 신임 총리로 선임⁶³⁾, 신임 총리는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개혁 및 조치를 의회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이 있음⁶⁴⁾

- 프랑스 총리는 공교육 회복, 해외 소재 영토 관련 문제 해결, 법치주의 강화 등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 통합을 중점으로 내각을 구성했음을 언급
- 비상사태 대응, 사회적 통합을 위한 조정, 주요 부문 개혁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

- (비상사태 대응) 연금개혁 재검토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달, 기존의 다년간 재정 목표를 준수하는 2025년 예산 채택⁶⁵⁾
- (사회적 통합을 위한 조정) 정당 자금 위탁 공공기관(민주주의 은행) 설립, 비례대표제 도입, 공영방송 개혁, 관료주의 타파, 지방 당국 자치 강화, 기업이 정신 보호를 위해 기하급수적인 증세 지양 등
- (개혁 조치) 불법체류자 귀환 추진, 기존 친환경 정책 추진 및 확대, 교육 경쟁력 강화, 마요트 디바우트(Mayotte debout) 계획⁶⁶⁾ 이행, 의약품 환급 축소 철회 등
- 바이루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연금 개혁 지속 추진 등의 사유로 정당 3곳⁶⁷⁾을 주체로 1월 14일에 제출되어 1월 16일 의회 표결에 돌입했으나 부결⁶⁸⁾

60) ICC/Tech&Touch 펀드란 문화 및 창조 산업(CCI) 스타트업 전용 펀드(ICC 펀드)와 새로운 기업 모델 및 신기술과 문화 창조 콘텐츠를 융합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시드 및 벤처 캐피탈 펀드(Tech&Touch 펀드)를 의미

61) l'appel à manifestation d'intérêt Culture, Patrimoine numérique

62) 프랑스 정부, "Ce qu'il faut retenir d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 François Bayrou," 2025. 1. 14., <https://www.info.gouv.fr/actualite/ce-quil-faut-retenir-d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e-francois-bayrou>, 검색일자: 2025. 1. 16.

63) 프랑스 법률 사이트, "Décret du 13 décembre 2024 portant nomination du Premier ministre," 2024. 12. 14.,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0774288>, 검색일자: 2025. 1. 16.

64) 프랑스 정부, "Qu'est-ce qu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2022. 7. 5., <https://www.info.gouv.fr/actualit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 검색일자: 2025. 1. 16.

65) 프랑스 2025년 예산 채택 일정 지연에 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12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12. 31., p. 37 참고, <https://www.kipf.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50>

66) 사이클론 치도(chido)가 상륙하여 피해를 받은 프랑스 해외령 마요트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바이루 총리가 추진하는 복원 계획

67)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녹색당, 공산당

68) 프랑스 하원,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dépos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9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rejet-d-une-motion-de-censure-deposee-en-application-de-l-article-49-alinea-2-de-la-constitution>, 검색일자: 2025. 1. 21.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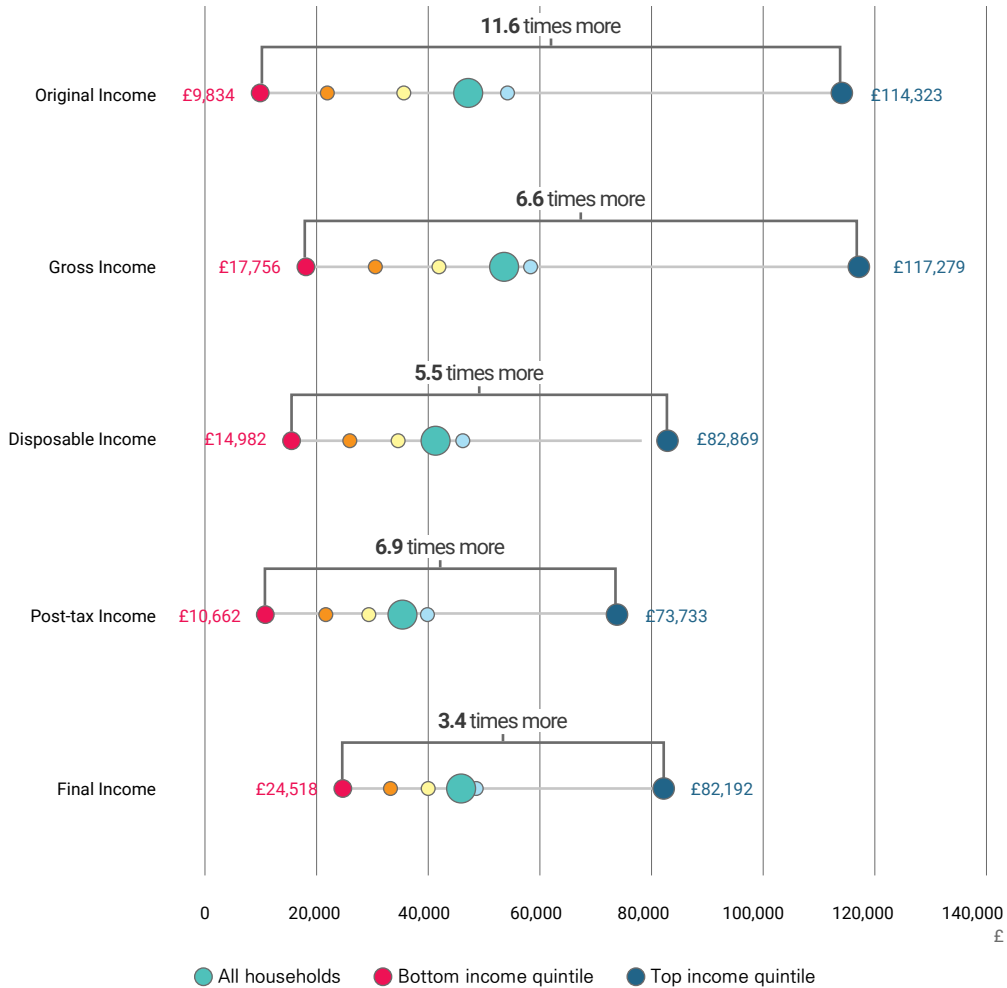
- ◆ 영국 통계청, “2022-23회계연도 조세부담 및 재정 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2024. 12. 19.)⁶⁹⁾
 - (배경) 영국 통계청은 매년 직·간접세, 현물·현금 급여 등이 소득 분위별 가구 소득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직접세는 소득세, 국민보험기여금(NICs), 지방세(Council Tax), 학자금 대출 상환금 등을,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담배세, 주세, 유류세, 인지세와 같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포함
 - 현금 급여는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자녀수당(Child Benefit) 등을, 현물 급여는 국가의료서비스(NHS), 교육, 무상보육 등의 비현금 급여를 포함
 - (주요 내용) 2022-23회계연도의 조세부담과 재정 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그림 5], [그림 6] 참고)
 - 조세부담 및 재정 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중위(median) 본원소득은 37,300파운드였으나, 조세부담과 재정 수혜가 모두 적용된 중위 최종소득은 39,700파운드로 증가
 - 상위 20%의 본원소득은 114,300파운드로 하위 20%의 본원소득 9,800파운드 대비 11.6배 더 컸으나, 최종소득은 각각 82,200파운드와 24,500파운드로 그 비율이 3.4배로 감소
 - 조세부담 및 재정 수혜의 재분배 효과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본원소득 지니계수⁷⁰⁾는 47.2%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2.9%p 감소하였고, 최종소득 지니계수는 27.7%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2.1%p 감소*
 - * 본원소득과 최종소득에서의 지니계수는 모두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
 - 하위 20%의 본원소득은 9,834파운드, 총소득은 17,756파운드로, 현금 급여를 통해 소득이 7,922파운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취약 가구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⁷¹⁾ 지급의 영향에 기인
 - 순 수혜자(조세부담 대비 재정 수혜 규모가 더 큰 개인)의 비율은 53.6%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p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2020-21회계연도) 기간 동안 재정 수혜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된 영향에 기인

69)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 2024. 12. 1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theeffectsoftaxesandbenefitsonhouseholdincome/financialyearending2023>, 검색일자: 2024. 12. 26.

70) Gini coefficient: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0'(완전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71) cost of living payment: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

그림 5 2023-23회계연도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주 1. Original Income(본원소득): 근로, 개인연금, 투자, 기타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2. Gross Income(총소득): 본원소득과 현금급여를 합한 소득

3. Disposable Income(가처분소득):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소득

4. Post Tax Income(세후소득):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제외한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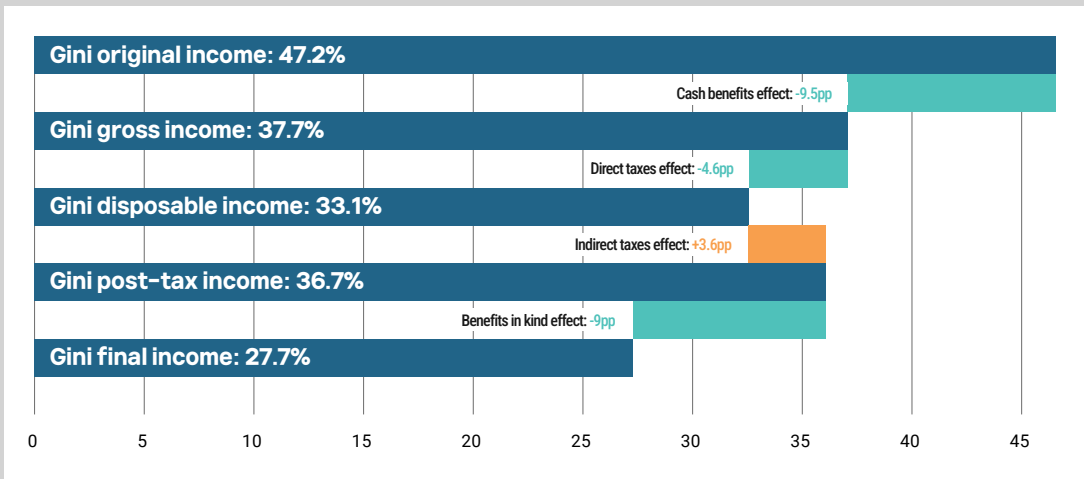
5. Final Income(최종소득): 세후소득에 현금급여를 합한 소득

6. 소득 분위는 총 5개 구간으로 구분. 소득 최하위 분위(Bottom income quintile)는 소득 하위 20%까지를, 소득 최상의 분위(Top income quintile)은 소득 상위 20%(하위 100%)까지를 의미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 2024. 12. 19., Figure 1.

그림 6 2022-23회계연도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단위: %)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3," 2024. 12. 19., Figure 2.

- ◆ 영국 재무부,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에 대한 성과발표(2025. 1. 15.)⁷²⁾
- (개요) 2024년 7월, 조기총선을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를 신설⁷³⁾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78억파운드(정부자금과 민간투자 유치금 포함)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성장 및 청정 에너지 분야 정책을 지원하고 영국 전역에 혁신적인 투자를 강화
- (성과) 지난 6개월 동안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고, 약 16억파운드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영국 전역에 성장을 촉진

- 8,600개의 일자리 창출은 디지털 및 청정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택 개보수(retrofit) 부문에서 6,5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 될 것으로 예상
- 약 16억파운드 규모의 민간 투자금은 청정 에너지 및 성장 부문 프로젝트에 투입
- ▶ 콘월, 요크셔, 링컨셔, 컴브리아 지역 다수의 기업과 가구에 광대역 통신망을 연결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

72) HM Treasury, "Chancellor's National Wealth Fund fuels 8,600 jobs in six months," News story, 2025. 1. 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s-national-wealth-fund-fuels-8600-jobs-in-six-months>, 검색일자: 2025. 1. 21.

73) 세부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 6., p. 38 참고

74) UK Infrastructure Bank: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 설립된 영국 정부 소유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주로 청정에너지, 운송, 디지털, 수자원 폐기물과 관련한 민간과 지역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자본투자, 보증, 자문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 (향후 계획) 영국 인프라 은행(UKIB)⁷⁴⁾의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
-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그린 수소, 탄소 포집,

항만, 기가팩토리(gigafactory), 녹색 철강 관련 산업에 투자

- 지역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성장을 도모



호주

예산·결산 등

- ◆ 호주 재정부, 2024년 12월 재정보고서 발표(2024. 1. 31.)⁷⁵⁾
- 2024-25회계연도 시작인 7월부터 12월까지 반기 예산수지는 207억호주달러 적자로 집계
- 반기 수치는 3,423억호주달러, 지급은 3,630억호주달러이며, 순자산은 -5,460억호주달러, 순채무는 8,096억호주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기타

-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글로벌 희토류 공급 촉진을

위해 'Nolans project'에 2억호주달러 투자 발표 (2025. 1. 15.)⁷⁶⁾

- (개요) 호주 정부는 최근 핵심광물 개발 및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Nolans project는 호주 북부 Alice Springs에서 북쪽으로 135km 떨어진 Nolans 부지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인 희토류 원소를 채굴하고 가공하기 위한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임
- (내용) 호주 정부는 국가재건기금(NRFC)⁷⁷⁾을 통해 광물탐사업체인 Arafura사에 2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Nolans project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75) 호주 재정부, Commonwealth Monthly Financial Statements, 2025. 1. 31., <https://www.finance.gov.au/publications/commonwealth-monthly-financial-statements/2025/mfs-december>, 검색일자: 2025. 1. 31.

76)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200 million investment in critical minerals to build Australia's future," 2025. 1. 15., <https://www.minister.industry.gov.au/ministers/husic/media-releases/200-million-investment-critical-minerals-build-australias-future>, 검색일자, 2025. 1. 20; 호주 국가재건기금, "NRFC boosting global rare earths supply through cornerstone \$200 million investment commitment in Arafura's transformational mining project," 2025. 1. 15., <https://www.nrfc.gov.au/news-and-media-releases/nrfc-boosting-global-rare-earths-supply-through-cornerstone-200-million-investment-commitment-arafuras-transformational-mining-project>, 검색일자: 2025. 1. 20.

77)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 Corporation; NRFC)은 국가재건기금법 2023(National Reconstruction Fund Corporation Act 2023)에 따라 호주 정부가 설립한 연방 기관이며, 국가재건기금법의 목적은 호주 경제의 우선순위 분야로 자금흐름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임

고 발표

- 이 프로젝트는 광산 개발 및 정제시설 운영을 통한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특히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중심으로 한 NdPr⁷⁸⁾ 산화물을 생산할 광산, 가공 공장 및 관련 인프라 건설을 포함
- Nolans project는 38년간 연 4,440톤의 NdPr을 생산할 계획이며, 2032년부터 세계 NdPr 수요

의 약 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

- (기대효과) Nolans project는 건설 단계에서 600개 이상, 운영 단계에서 3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원주민을 포함한 고용 기회를 촉진하고, 북부 준주의 개발 지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호주 경제가 넷제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표 16 2024년 12월 재정상황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 2024-25회계연도 12월 실적 | 2024-25회계연도 12월 누계 ¹⁾ | 2024-25회계연도 예산안 ²⁾ 전망 | 2024-25회계연도 중기 ³⁾ 전망 |
|---|-----------------------|-------------------------------------|-------------------------------------|------------------------------------|
| 수취(Receipts) ⁴⁾ | 61.8 | 342.3 | 698.4 | 704.2 |
| 지급(Payment) ⁴⁾ | 68.5 | 363.0 | 726.7 | 731.1 |
|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⁴⁾ | -6.7 | -20.7 | -28.3 | -26.9 |
| 재정수입(Revenue) ⁵⁾ | 58.8 | 346.9 | 711.5 | 718.3 |
| 재정지출(Expenses) ⁵⁾ | 65.1 | 358.8 | 734.5 | 758.6 |
| 재정수지(Fiscal balance) ⁶⁾ | -6.9 | -12.0 | -29.3 | -45.9 |
| 순자산(Net worth) ⁷⁾ | . | -546.0 | -545.1 | -570.6 |
| 순채무(Net debt) ⁸⁾ | . | 522.5 | 522.5 | 540.0 |

- 주 1) 2024.7-2024.12월 누계
- 2) 2024-25 예산안은 2024.5월 발표
- 3) 2024-25 중기재정전망(MYEFO)은 2024.12월 발표
- 4) 현금주의 기준. 예산수지=수취-지급
- 5) 발생주의 기준
- 6) 발생주의 기준.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 7) 순자산=총자산-총부채
- 8) 채무(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에서 자산(현금 및 예금, 선급금,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을 차감

출처 호주 재정부, "Australian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ector Monthly Financial Statements for December 2024", 2025. 1. 31. 재구성

78) NdPr은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의 주원료이며, 차량용 모터, 풍력발전용 터빈,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임.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그룹도 호주에서 NdPr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예산·결산 등

- ◆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⁷⁹⁾ 개최(2024. 12. 11~12.)⁸⁰⁾
- (2024년 평가) 2024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十四五規劃)⁸¹⁾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였으며,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주요 성과) 경제의 질적 발전, 생산력 증대, 개혁 심화, 민생보장 강화
- (2025년 경제 목표) 안정 속 성장을 목표로 경제 발전을 추진
 - (주요 목표) 안정적인 경제성장, 고용 및 물가 안정, 경제성장 목표와 국민소득 증가 동시 달성
- (정책 방향)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⁸²⁾을 실시하고,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
 - (재정 정책) 재정적자 비율 확대, 초장기 특별국채

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강화,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출구조 최적화

- ▶ 2024년 중국 재정적자는 GDP의 3% 수준(4조 600억 위안)이었으며, 전문가들은 2025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약 4% 수준(약 5조 6천억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⁸³⁾
- ▶ 2024년 초장기 특별국채 약 1조위안, 지방특수채권 신규 발행 약 3조9천억위안, 2023년 4분기 추가 발행된 1조위안의 국채(대부분 2024년 수자원 부문 등 인프라에 투자) 등 약 10조위안의 정부채권 자금이 투입됨
- ▶ 2025년 채권발행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1~2조위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통화 정책) 지급 준비율 및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부동산 정책) 2025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활용하여 토지 및 기

79) 매년 12월 당 최고 지도자와 국무원 및 경제관련 책임자가 참여하여 내년도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와 주요 경제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80) 중국 공산당, “中央经济工作会议在北京举行,” 인민일보(人民日报) 보도자료, 2024. 12. 13., <http://cpc.people.com.cn/n1/2024/12/13/c64094-40381254.html>, 검색일자: 2025. 1. 14.

81) 2020년 10월 26~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5중 전회에서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목표를 담은 중기 계획으로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됨, 6대 목표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 달성, 개혁개방의 새로운 전진, 사회문화 수준의 새로운 향상,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 민생복지의 새로운 도약, 국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제고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0. 12. 2.,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3467&act=view&act=view&list_no=3467&cg_code=, 검색일자: 2025. 1. 22.

82) 2008년 ‘온건적 재정정책’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변경한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다가 16년 만에 재정정책 기조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변경

83) 21世纪经济报道 21财经APP周满泉北京报道, “财政部详解更加积极的财政政策: 政策空间充足, 将梯次拿出政策“后手”, 2025. 1. 10.,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0eed0e4420d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일자: 2025. 1. 23.

- 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장성 임대주택(保障性租賃住房)⁸⁴⁾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⁸⁵⁾
- ▶ 주택 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부동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 정책) 단계적인 사회보험요율(社保費率)⁸⁶⁾,^{87), 88)} 인하, 일회성 고용 보조금(一次性擴崗補助)⁸⁹⁾ 연장, 기업 운영비용 절감, 창업 담보 대출, 정부 금융 담보 시스템(政府性融資擔保體系)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⁹⁰⁾
- (중점 과제) 내수 확대 및 소비·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9가지 중점과제를 발표
 - (내수 확대 및 소비·투자 활성화) 소비 진작과 투자 제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및 소비 여력 확대, 두 가지 중점(兩重)⁹¹⁾ 및 두 가지 새로운 정책(兩新)⁹²⁾ 추진 확대, 서비스 소비 확대,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 정부 투자를 통한 사회 투자 유도 등
 - (과학기술혁신 및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지원) 핵심 기술 연구와 기초연구 강화,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전환 지원, 혁신기업 육성 등
 - (경제체제 개혁 심화) 국유기업(國有企業)⁹³⁾ 개혁, 민영경제 촉진법 도입 등

84) 보장성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시민(대도시로 순유입되는 시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호적 및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주도로 공급되는 70㎡ 이하 소형 주택을 의미, 해당 지역의 같은 시장 임대주택 대비 임대료가 낮음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주택건설부, 보장성 임대주택 확대정책의 주요 내용,” 2023. 1. 19.,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2972&mid=a20200000000&board_id=18, 검색일자: 2025. 1. 24.

85) 21세기경제報道 21财经APP周瀟泉北京报道, “财政部详解更加积极的财政政策: 政策空间充足, 将梯次拿出政策“后手”,” 2025.1.10.,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0eed0e4420d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일자: 2025. 1. 23.

86) 중국 사회보험법 제2조에 의거하여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險一金)이라고 함.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그리고 근로자의 주택 구매, 임대, 또는 주택 대출 상황을 지원하는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을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1. 10. 12.,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3051200&bid=0019&list_no=7583&act=view, 검색일자: 2025. 1. 23.

87) 중국의 사회보험요율은 지역,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연금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주와 개인의 부담비율이 다르고,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고 있음. 2019년 국무원의 사회보험료 인하 종합대책 고시(降低社會保險費率綜合方案的通知)에 따르면 연금보험 고용주(單位) 부담 16% 이하(16%를 초과하는 지역은 인하 가능), 실업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 단계적 인하 계획 등을 발표
국무원,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降低社會保險費率綜合方案的通知,” 2019. 4. 4.,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9-04/04/content_5379629.htm, 검색일자: 2025. 1. 24.

88)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 보험료를 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 행정구역(자치구, 직할시) 내에서는 고용주와 개인 부담 비율을 같게 하고, 개인 부담이 고용주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2024년 말까지 연장)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人力資源社會保障部 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於階段性降低失業保險、工傷保險費率有關問題的通知,” 2023. 3. 29.,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3/31/content_5749452.htm, 검색일자: 2025. 1. 24.

89) 일회성 고용 보조금 정책은 2023년 미취업 일반졸업자, 퇴학 후 2년 이내 일반대졸자를 고용한 기업 그리고 실업자로 등록된 16~24세 청년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위해 1개월 이상 실업보험, 업무관련 상해 보험, 근로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 확대 보조금을 지급(1인당 1,500위안 이하로 지급, 12월 31일까지 적용)
중국 재정부, “我國繼續實施一次性擴崗補助政策,” 2023. 11. 17., https://bj.mof.gov.cn/ztdc/czysjg/jyjl/202311/t20231117_3917106.htm, 검색일자: 2025. 1. 23.

90) 21세기경제報道 21财经APP周瀟泉北京报道, “财政部详解更加积极的财政政策: 政策空间充足, 将梯次拿出政策“后手”,” 2025. 1. 10.,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0eed0e4420d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일자: 2025. 1. 23.

91) 두 가지 중점(兩重): 국가중대전략시행(國家重大戰略實施),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重點領域安全能力建設)을 의미. 국가중대전략시행은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지역 균형 발전 전략, 혁신 주도형 성장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은 에너지, 식량, 산업 공급망, 금융 등 국가의 핵심 산업 및 전략 분야에서 안보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92) 두 가지 새로운 정책(兩新): 노후화된 산업 설비와 장비를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규모 설비 갱신(大規模設備更新), 소비재 제품(가전, 자동차, 가구 등)의 교체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인 소비재 이구환신(消費品以舊換新)을 말함

93) 정부가 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경제 발전과 국가 전략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국유기업은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으로 구분되고 비효율성, 과도한 부채, 혁신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대외무역 안정화, 자유무역지구 질적 개선,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실행 가속화, 외국인 투자 확대 등
 - (중점 분야 리스크 관리) 부동산 시장 회복 및 주택 수요 확대 지원,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불법 금융 활동 단속 강화 등
 - (새로운 도시화 및 농촌 진흥)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 농산물 공급 안정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민 소득 증대, 현대 농업 경제 시스템 구축 등
 - (지역 균형 발전 강화) 동부, 중부, 서부 및 동북 지역 간의 산업 협력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해양 경제 및 만 지역(灣區) 경제권⁹⁴⁾의 발전 가속화 등
 - (친환경 발전 추진) 친환경 기술 혁신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재생 에너지 기반 확충, 생물 다양성 보호 강화 등
 - (민생 및 사회 안전 강화) 고용지원 확대, 주요 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강화, 교육·의료·요양 등 기본 공공서비스 개선,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 안전 시스템 강화 등
- ◆ 중국 재정부, 티베트 지진피해 재난구호 지원 발표 (2025. 1. 7., 2025. 1. 8.)^{95), 96)}
- 2025년 1월 7일 티베트 시가체시 덩르현(西藏日喀則市定日縣)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
 - 사망자 126명, 부상자 188명 발생, 주택 3,609가구가 붕괴됨⁹⁷⁾
 - 중국 재정부는 중앙자연재해구호자금(中央自然災害救災資金)⁹⁸⁾ 1억위안과 농업 생산 재해 방지 및 복구 자금 8천만위안을 긴급 지원
 - 중앙자연재해구호자금 1억위안은 피해 주민 구조 및 대피, 위험 제거, 2차 재해요소 점검 및 정비, 주택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
 - 농업 생산 재해 방지 및 복구 자금 8천만위안은 손상된 농경지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복구와 재해로 인한 약품, 연료 등의 구입비용 보조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
- ◆ 중국 국가통계국, 2024년 국민경제운영(國民經濟運行) 결과발표(2025.1.17)⁹⁹⁾
- 2024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에서 점진적인 발전 목표를 달성했으나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국내 수요 부진 등의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

94)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와 항저우 만 경제권(杭州灣經濟區)이 있음.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는 광둥성(廣東省)의 9개 도시(광저우, 선전, 주하이 등)와 홍콩(香港), 마카오(澳門)를 포함한 경제권으로 중국 남부의 핵심 경제 지역으로 첨단 금융 무역 등이 집중되어 있음. 항저우 만 경제권은 저장성(浙江省)을 중심으로 항저우 만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으로 창장 삼각주(長三角)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음

95) 중국 재정부(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財政部、應急管理部預撥1億元中央自然災害救災資金 支持西藏做好地震災害救災工作,” 2025. 1. 7., https://zyjh.mof.gov.cn/gzdt/202501/t20250107_3951268.htm, 검색일자: 2025. 1. 15.

96) 중국 재정부(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 “財政部緊急預撥農業生產防災救災資金8000萬元 支持西藏做好地震災損農業生產和畜牧養殖設施修復等相關救災工作,” 2025.1.8., https://nys.mof.gov.cn/bgtGongZuoDongTai_1_1_1_3/202501/t20250108_3951351.htm, 검색일자: 2025.1.15.

97) 21世紀經濟報道(중국 CCTV 재인용 보도), 2025. 1. 8.,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10/herald/0eed0e4420cf4db261e03924f74d8e19.html>, 검색일자: 2025. 1. 23.

98) 중앙자연재해구호자금은 재정부와 응급관리부(應急管理部)가 집행하는 중국 중앙정부예산의 재난방지 및 긴급관리 지출(災害防治及應急管理支出)로 2024년 예산 기준 454.46억위안으로 편성되어 있음

99)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2024年經濟運行穩中有進 主要發展目標順利實現,” 2025. 1. 17., https://www.stats.gov.cn/sj/zxfb/202501/t20250117_1958332.html, 검색일자: 2025. 1. 17.

- 향후 정부는 내수 확대와 경제 및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국내총생산량(全年國內生產總值)은 134조 9,084억위안¹⁰⁰⁾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2024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 증가¹⁰¹⁾
 - 2024년 1차 산업 전년 대비 3.5% 증가, 2차 산업 전년 대비 5.3% 증가, 3차 산업 전년 대비 5.0% 증가
 - 2024년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 증가
- 2024년 수출(出口) 및 수입(進口)은 전년 대비 각각 7.1%, 2.3% 크게 증가
-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全年居民消費價格; CPI)는 전년 대비 0.2%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 2024년 도시조사실업률(全國城鎮調查失業率)¹⁰²⁾은 5.1%(전년 대비 0.1%p 감소)
- 2024년 인구수는 14억 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감소(2024년말 기준)

표 17 중국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 2023Q1 | 2023Q2 | 2023Q3 | 2023Q4 | 2024Q1 | 2024Q2 | 2024Q3 | 2024Q4 |
|---------|--------|--------|--------|--------|--------|--------|--------|--------|
| GDP 성장률 | 1.7 | 1.2 | 1.5 | 0.9 | 1.5 | 0.9 | 1.3 | 1.6 |

(단위: 전분기 대비 %)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2024年經濟運行穩中有進 主要發展目標順利實現," 2025. 1.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스웨덴

-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1월 경제 현황 발표(2025. 1. 20.; 2025. 1. 10.)^{103), 104)}
 - 대부분의 지표는 장기 추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24년 11월, 가계 소비와 기업 생산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 순환 시계가 회복 단계로 전환
 - 11월 계절 조정 GDP는 전월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일수 조정(Calendar-adjusted) GDP는 전

100) 2경 4,283조 5,120억원(1위안=180원 기준)

101) 중국의 국내총생산(國內生產總值)은 최종소비지출(最終消費支出)+총자본형성(資本形成總額)+상품 및 서비스의 순 수출(貨物和服务淨出口)로 계산됨

102) 중국 도시 지역 주민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실업률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추산한 실업인구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함

103) 스웨덴 통계청, "Ekonomiskt uppsving i November," 2025. 1. 2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amnesovergripande-statistik/sveriges-ekonomi-statistiskt-perspektiv/pong/statistiknyhet/sveriges-ekonomi--statistiskt-perspektiv-nr-1-2025/>, 검색일자: 2025. 1. 21.

104) 스웨덴 통계청, "BNP upp i November," 2025. 1. 1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nationalrakenskaper/ovrigt/nationalrakenskaper-ovrigt/pong/statistiknyhet/nationalrakenskaper-ovrigt-bnp-indikator-manad-november-2024/>, 검색일자: 2025. 1. 17.

년 동월 대비 2.1% 증가

- 경제활동은 11월에 상승세를 보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들과 함께 공공기관의 생산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 서비스 생산 부문 중에서 정보통신 산업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상품 부문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지속적으로 강한 회복을 보임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2월 총부채 현황 발표 (2025. 1. 17.)¹⁰⁵⁾

- 2024년 12월 말 기준 총부채는 9,315억크로나로, 11월 대비 2,800억크로나 감소
- 이는 주로 스웨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및 비금융 기업들의 차입이 감소했기 때문
- ▶ 12월 말 기준, 총부채 중 81%는 채권(bonds), 19%는 화폐시장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으로 구성

표 18 2024년 11월 스웨덴 경제현황

(단위: %)

| 지표 | 전월비 ¹⁾ | 전년동월비 ²⁾ |
|---------------------|-------------------|---------------------|
| GDP | 1.4 | 2.1 |
| 기업 | | |
| 기업생산 | 1.4 | 2.7 |
| 산업생산 | 2.4 | 2.6 |
| 산업 신규 수주 | 2.8 | 5.1 |
| 서비스생산 | 1.1 | 3.9 |
| 무역 및 소비 | | |
| 가계소비 | 1.1 | 1.6 |
| 소매판매 | -0.2 | 1.6 |
| 대외무역 | | |
| 물품 수출 ³⁾ | 0.6 | -4.4 |
| 물품 수입 ³⁾ | 0.3 | -2.9 |
| 물가 | | |
| 소비자가격(CPIF) | 0.5 | 1.8 |
| 생산자가격 | 3.1 | 0.3 |
| 노동시장 | | |
| 취업률 ⁴⁾ | -0.1 | -0.9 |
| 실업률 ⁵⁾ | 0.0 | 0.3 |
| 근무시간 ⁶⁾ | 0.1 | 0.3 |

- 주 1) 해외무역, 물가, 노동시장을 제외한 일수 조정(calendar-adjusted) 및 계절 조정
 2) 대외무역, 물가 및 노동시장을 제외한 일수 조정(calendar-adjusted)
 3) 조정되지 않은 현재 가격 기준이며, 월간 변화는 추세를 나타냄
 4) 15~74세 인구 대비 고용률을 의미하며, 백분율 변화를 나타냄. 월간 변화는 계절 조정 및 평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연간 변화는 원시값을 기준으로 함
 5) 15~74세 노동력 대비 실업률을 의미하며, 백분율 변화를 나타냄. 월간 변화는 계절 조정 및 평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연간 변화는 원시값을 기준으로 함
 6) 해외취업을 포함한 15~74세의 근무시간을 나타냄. 월간 변화는 계절 조정 및 평활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연간 변화는 원시값을 기준으로 함
 스웨덴 통계청, Sveriges ekonomi Statistiskt perspektiv – Ekonomiskt uppsving i november, 2025.11.1.,

출처 https://www.scb.se/contentassets/ad0c576dc445477eadc412e7a530a7b0/nr0001_2025m01_ti_a28ti2501.pdf, 검색일자: 2025. 1. 23.를 인용하여 저자 재작성.

105) 스웨덴 통계청, "Minskad upplåning i räntebärande värdepapper," 2025. 1. 17.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finansmarknad/emitterade-vardepapper/emitterade-vardepapper/pong/statistiknyhet/emitterade-vardepapper16/>, 검색일자: 2025. 1. 21.

되어 있으며, 채권은 11월 대비 620억코로나, 화폐시장 상품 부채는 2,190억코로나 감소

- ▶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1,280억코로나, 금융기관에서 2,150억코로나, 비금융기업에서 40억코로나가 감소한 반면, 스웨덴 정부에서 660억코로나 증가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2025. 1. 15.)¹⁰⁶⁾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1월 1.6%에서 12월 0.8%로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¹⁰⁷⁾ 상승률은 11월 1.8%에서 12월 1.5%로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에너지 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 상승률은 11월 2.4%에서 12월 2.0%로 하락
- 통계청의 가격통계학자인 칼 마르텐슨(Carl Mårtensson)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12월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 0.7%에서 2024년 0.0%로 하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이 기여
 - 12월에는 여행과 운송 서비스 모두 가격이 상승(특히 국제선 가격)하였으며, 의류 분야의 가격도 상승
 - 반면, 전기와 숙박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11월부터 소유주 점유 주택과 임차인 소유 주택의 이자 비용이 계속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기여
 - 주택 임대료와 임차인 소유 주택 관리비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기요금 하락과 임차인 소유 주택 이자 비용 감소로 상쇄
 - TV, 영화, 음악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락 및 문화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였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도 상승
 - 반면, 연료 가격은 하락

표 19 2024년 12월 CPI, CPIF, CPIF-XE 변화

(단위: %)

| 구분 | 전월비 | 전년동월비 |
|-------------------|-----|-------|
| 소비자물가지수(1980=100) | 0.0 | 0.8 |
| CPIF(1987=100) | 0.3 | 1.5 |
| CPIF-XE(1987=100) | 0.3 | 2.0 |

출처 스웨덴 통계청, "Inflationstakten enligt KPI 0,8 procent i december 2024 Statistisknyhet från," <표> "Indextal, månads- och årsförändring för KPI, CPIF och CPIF-XE"

106) 스웨덴 통계청, "Inflationstakten enligt KPI 0,8 procent i december 2024 Statistisknyhet från," 2025. 1. 15.,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priser-och-ekonomiska-tendenser/priser/konsumtprisindex-kpi/pong/statistisknyhet/konsumtprisindex-kpi-december-2024/>, 검색 일자: 2025. 1. 17.

107)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 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또한 에너지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자주 사용됨

표 20 2024년 12월 상품 및 서비스별 CPI의 등락률

(단위: %)

| 구분 | 전월비 | 전년동월비 |
|------------------------|------|-------|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01) | - | 1.7 |
| 의류 (03) | 1.3 | - |
| 전기 (04.5.1) | -2.7 | -6.9 |
| 소유주 점유 주택 이자비용 (04.x) | -3.4 | - |
| 임차인 소유 주택 이자비용 (04.y) | -4.0 | -9.4 |
| 주택 임대료 (04.S.1) | - | 4.9 |
| 임차인 소유 주택 관리비 (04.S.2) | - | 6.5 |
| 연료 (07.2.2) | - | -13.3 |
| 운송 서비스 (07.3) | 10.0 | - |
| 오락 및 문화 (09.4) | - | 4.5 |
| 여행 (09.6) | 14.3 | - |
| 숙박 (11.2) | -5.7 | - |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2) | - | 3.7 |

출처 스웨덴 통계청, "Inflationstakten enligt KPI 0,8 procent i december 2024 Statistiknyhet från." 중 <표> 'Varor och tjänster som främst påverkade månadsförändringen enligt KPI'와 'Varor och tjänster med störst bidrag till inflationstakten enligt KPI'를 인용하여 저자 재작성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44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2월 17일 발행 | 제344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02